

■ 참가 문의

4·9 통일평화재단 02-777-0641 팩스 02-775-6267  
한겨레통일문화재단 02-706-6008 팩스 02-706-6009



4·9 통일평화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기억의 정치: 쟁점과 과제”

-교거사 관련 위원회와 교과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4·9 통일평화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 “기억의 정치: 쟁점과 과제”

-교거사 관련 위원회와 교과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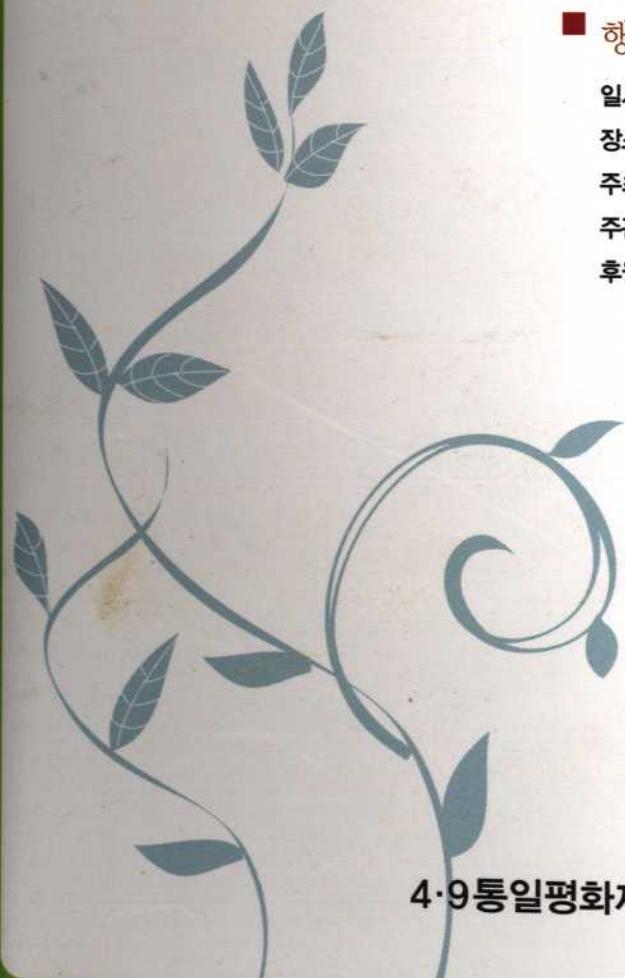
일시 2008년 10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4·9통일평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관 한겨레평화연구소, 포럼 '진실과 정의'

후원 한겨레신문사



4·9통일평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4·9 통일평화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 “기억의 정치: 쟁점과 과제”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교과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 ■ 행사개요

일시 2008년 10월27일(월) 오후1시30분~6시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4·9통일평화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관 한겨레평화연구소, 포럼 ‘진실과 정의’

후원 한겨레신문사



## 프로그램

제1부	과거사 관련 위원회: 성과와 과제	
사회	김형태(변호사, 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발표	김동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7
	김호철(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경과와 과제	25
	허상수(성공회대 교수, 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 미래 창조는 과거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52
토론	강창일(민주당 의원) 이석태(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변호사)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제2부 교과서 역사서술: 쟁점과 과제

사회	정재정(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발표	박효종(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근현대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65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위험한 '대안', 위기의 역사교육	85
토론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제1부

## 과거사 관련 위원회: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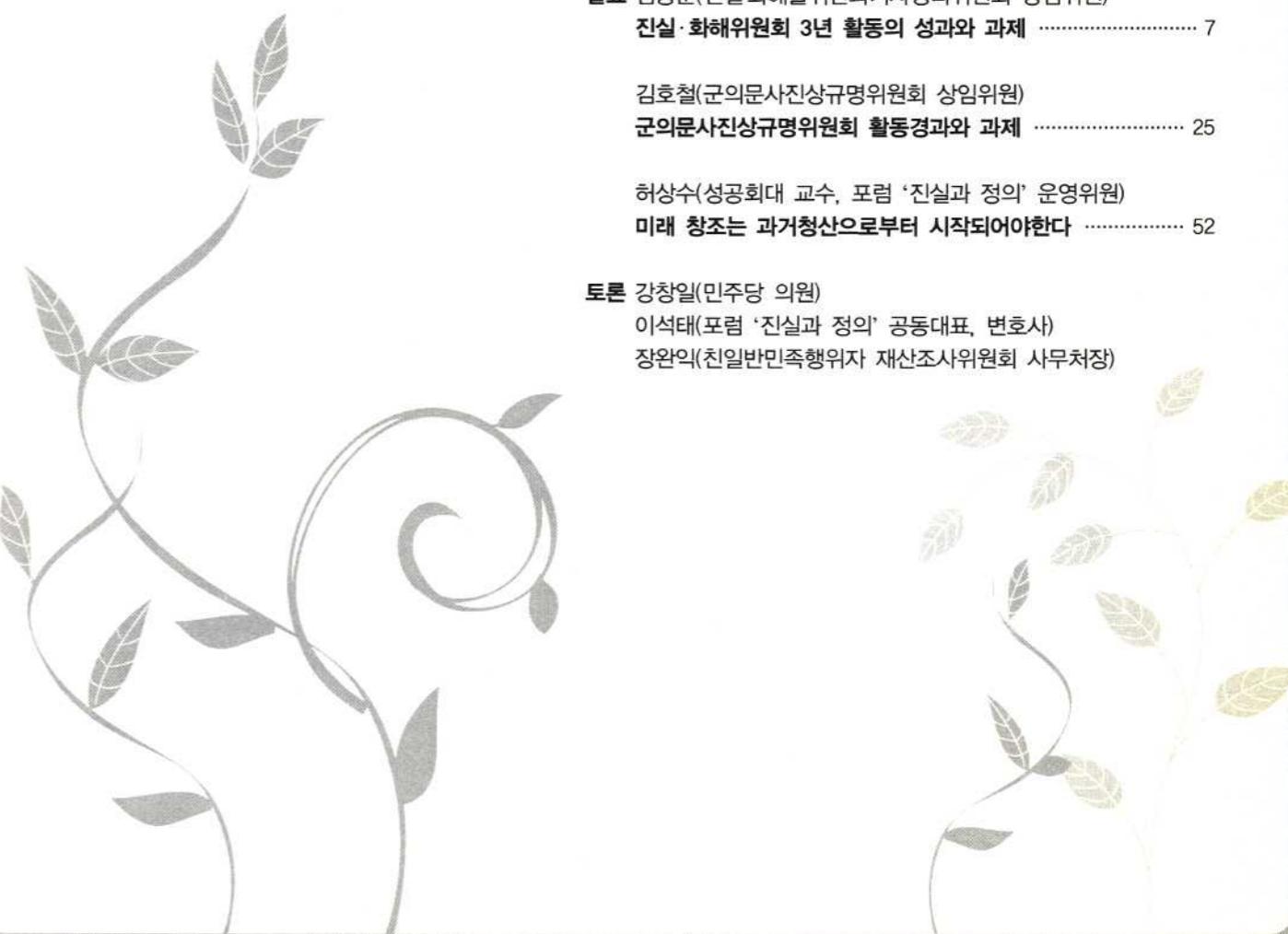
사회 김형태(변호사, 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발표 김동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7

김호철(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경과와 과제 ..... 25

허상수(성공회대 교수, 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  
미래 창조는 과거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52

토론 강창일(민주당 의원)  
이석태(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변호사)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진실·화해위원회 3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김동준

### 1. 위원회의 성과

#### 1) 진실규명, 사건 처리

위원회는 2006년 4월 25일 충북영동군 횡간 장터 만세운동 등 항일독립운동 3건, 고양 금정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382건, 이수근 간첩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3건을 포함하여 총 388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2006년 2월말까지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사건 10,860건 중 9,154(84.2%)건을 최종 조사개시 결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자료조사 등을 통해 2006년 11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김의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사건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또한 나주 동박굴재 사건,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 양평 적대세력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 사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와 관련한 사건들도 잇달아 진실규명 되었다.

2006년 11월 첫 진실규명 결정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총 1,758건을 진실규명 및 불능을 결정하였으며, 매월 평균 50여건(사건수 3~4건)정도를 결정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5건, 2007년 988건, 2008년 750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8·15저격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 1980년대 언론통폐합 사건 등 7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진실규명이 되었고 나머지 5건은 조사 중에 있다

## 2) 권고를 통한 진실규명의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지금까지 진실규명 결정 사건 1,700여건에 대해 국가의 사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재심, 후유증 치료, 손해 배상, 위령사업, 역사기록 등재,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평화교육 강화 등 다양한 권고를 했다.

이후 권고 조치가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여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2007.8.27. 대통령 훈령 제195호)되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2008년 정부조직 개편 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2008년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양 금정굴 사건 및 나주 동박굴재 사건 관련하여,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령제에 참석하여 사과 및 유감을 표명했다.

또, 2008년 9월까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시 재심을 권고한 18건 중 9건에 대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이 있었다. 이 중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기타 - 유해발굴 등

위원회는 2006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 매장지 154개소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유해 발굴이 가능한 37개를 선정하고 2007년 6월 전남 구례 봉성산을 시작으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240여구, 청원 분터골에서 110여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34구, 구례 봉성산에서 13구 등 총 400여구의 유해와 탄피, 도장, 명찰 등의 유품 1,085점도 발굴했다.

2008년에는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전남 순천시 매곡동,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명도, 경남 산청군 시천면원라·외공리 등 5개소 7개 지점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33개 지역에 유해매장 추정지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2. 위원회의 과제

### 1) 사건처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3,1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체사건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초 조사계획보다 사건처리의 진척도가 미흡한 편이다.

다 사건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의 증언과 사실 관련 자료 등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이에 따라 엄격한 증명력을 확보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건유형에 따라 정황적 증거 등을 활용한 만·형사 판결 사례를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 2) 후속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현재 법령의 근거에 의해 국가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화해조치로는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의 화해조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가해자 처벌이나 배보상보다는 진실과 화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화해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위원회는 피해명예회복 및 화해방안,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해 발굴 이후 안치시설 설치, 추가 유해 발굴 등 후속조치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해 안치시설 설치, 추가 유해 발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예산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조속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및 적대세력 사건

〈표 1〉 진실규명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건 유형	진실규명 결정 사건명(건)	결정일자	세분류
항일 독립 운동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07. 4. 17.	3.1운동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운동 사건	07. 5. 15.	학생운동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07. 5. 15.	신간회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 사건	07. 5. 29.	아나키즘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07. 11. 27.	신간회
	이현속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관한 건	08. 1. 29.	신사참배거부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08. 2. 12.	대중운동, 사회주의
	유자상의 군위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에 관한 건	08. 2. 12.	신간회
	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08. 2. 12.	대중운동, 사회주의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08. 2. 12.	대중운동, 사회주의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08. 2. 26.	대중운동, 사회주의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08. 2. 26.	해외(연해주)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08. 4. 8.	대중운동, 아나키즘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08. 6. 9.	대중운동, 아나키즘
	윤용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08. 6. 16.	군자금
항일 독립 운동	진실규명불능 결정 사건명(12건)	결정일자	세분류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사건	06. 12. 5.	해외(중국)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만세운동 사건	06. 12. 19.	3.1운동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07. 5. 29.	대중운동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07. 6. 26.	선전운동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07. 6. 26.	대중운동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07. 7. 3.	해외(일본)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만세운동 사건	07. 7. 10.	3.1운동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07. 9. 18.	3.1운동 신간회
	장동업의 남원 31독립만세운동 사건	07. 10. 16.	3.1운동
해외 동포사	이기호의 구례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07. 10. 30.	대중운동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	08. 2. 12.	3.1운동
	장상만의 속초·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건	08. 2. 12.	3.1운동 등
해외 동포사	해외동포사 진실규명 결정 사건명(2건)	결정일자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07. 4. 17.	
	파독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07. 8. 5.	

	발생 시기	가해 주체	진실규명 결정 사건명(17건)	결정일자	비고
집단	퇴각기	인민군 정치보위부 내무서원	양평 적대세력 사건	07. 7. 3.	
개별	점령기	내무서원 지방좌익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07. 7. 3.	
개별	점령기	인민군 지방좌익	주문진지역 장금출·장종원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07. 11. 27.	일부 진실규명
집단	퇴각기	지방좌익	완주에서 김태환 등이 지방좌익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07. 11. 27.	
개별	퇴각기	인민군 지방좌익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08. 1. 29.	
개별	퇴각기	인민군 지방좌익	가평 적대세력 사건	08. 1. 29.	
집단	퇴각기	지방좌익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08. 2. 12.	
집단	전쟁전	좌익세력	제한국회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사건	08. 5. 14.	
집단	퇴각기	좌익세력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 희생된 사건	08. 5. 14.	
집단	퇴각기	인민군 지방좌익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08. 6. 10.	
집단	점령기~퇴각후	인민군 지방좌익	금산지역 적대세력 사건	08. 6. 25.	군단위
집단	점령기~퇴각후	인민군 지방좌익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	08. 6. 23.	군단위
개별	점령기	지방좌익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08. 6. 30.	
집단	퇴각기	인민군 지방좌익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사건	08. 7. 1.	
개별	퇴각기	빨치산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08. 6. 30.	
집단	퇴각기	인민군 지방좌익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08. 6. 30.	
집단	퇴각기	지방좌익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08. 7. 1.	

##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표 2〉 진실규명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건유형	사건명	비고
예비검속	제주 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국민보도연맹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사건	
부역혐의사건	고양 금정굴 사건	
	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평택 청북면부역혐의 희생사건	
군경토벌 관련 사건	강화지역(강화도·석모도·주문도) 민간인 희생사건	
	나주 동박굴 재사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나주 경찰부대 사건	
	함평 양림 사건	
	고창 월림 사건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여순사건	고창지역 11사단 민간인 희생사건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1)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	
	구례지역 여순사건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미군관련사건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사건 요지〉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예비검속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경도 외 217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주민 218명이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1950. 7. 16. ~ 20. 경과 8. 20. 제주도 남제주군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에서 해병대사령부 산하 모슬포부대 부대원과 동 사령부 산하 모 대대 소속 분대장급 이상의 하사관들에 의해 집단 총살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을 받은 제주도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예비구금하였고, 등급분류 후 해병대사령부 산하 부대가 집단 총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3. 진실규명 결정</li> <li>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218명이며, 희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희생자는 1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회복</li> <li>• 공식사과</li> <li>• 위령사업</li> <li>• 관련기록정정</li> <li>• 역사기록정정</li> <li>• 평화인권교육</li> <li>• 관련법률정비</li> </ul>
보도연맹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호 등 216명의 신청인은 1950. 8. 경 10여 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870여 명이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총살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울산 사찰계 경찰과 울산지구CIC 대원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검속자들을 처형한 사실을 확인, 2007.11.27.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인원은 최소 870여명으로 추정되나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407명임</li> </ul>	
부역혐의 사건	청원오창창고 보도연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정웅 등 220명의 신청인은 1950. 6. 30. ~ 7. 8. 충북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 주민 400여 명,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오창창고 등에 구금된 뒤 경찰과 현병, 군인 등에게 총살되거나 창고 인근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으로 사망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조사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1. 13. 진실규명 결정. 신원 확인 사망자 수는 총 223명, 현장생존자 수는 총 92명으로 신원이 확인된 전체 피해자 수는 모두 315명</li> </ul>	
부역혐의 사건	고양금정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용성 등 47명의 신청인은 1950.10.9.부터 31.까지 경기도 고양지역과 파주 지역에서 거주하던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고양경찰서 관내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보조인력에 의해 금정굴 현장에서 희생자를 5명씩 무릎 꿇린 상태에서 살해된 것으로 확인, 2006. 6. 26. 진실규명으로 결정</li> <li>사건의 희생자는 최소 153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고산들 등 7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사과</li> <li>• 명예회복</li> <li>• 재발방지</li> <li>• 유해안치 및 위령 시설</li> </ul>
부역혐의 사건	고양부역혐의 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종호 외 4명의 신청인은 928 수복 후 1950. 10. 한 달 동안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벽제면, 신도면에서 주민 240여 명이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던 치안대에 의해 집단 사살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li> <li>위원회는 이 사건 지역의 치안대에 의한 불법적 연행 및 살해행위를 확인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다하여 2007. 11. 20. 진실규명으로 결정.</li> <li>사건의 희생자는 240여명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이범인 등 26명</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부역혐의 사건	남양주 진접진간면 부역혐의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종오 등 3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당시 9·28수복 후부터 1·4후퇴 직전까지 경기도경찰국과 양주경찰서의 지휘 아래에 있던 진접지서, 진간지서, 치안대(이후 향토방위대)에 의해 남양주 진접면과 진간면의 주민들이 집단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li> <li>조사결과 남양주 진접면진간면 주민들이 위 기간 중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장한국민학교와 진간국민학교 뒷산에서 집단 총살당한 사실을 확인, 2008. 5. 20. 진실규명으로 결정</li> <li>희생자는 모두 46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현상규 등 118명</li> </ul>	
	울진 부역혐의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년월 등 7명의 신청인은 김경순 등 수백 명이 1950. 9. 26.부터 1950년 12월 말경까지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울진경찰서와 특무대(CIC), 국군 제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신림 울시골, 후정리 부들골 등 여러 곳에서 총살 및 생매장의 방법으로 집단살해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위 신청사실을 확인하여 2008. 6. 30. 진실규명으로 결정</li> <li>희생자는 32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205명, 희생주정자 51명</li> </ul>	
	평택 청북면부역혐의희생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최승일은 한국전쟁 당시 9·28수복 직후인 1950. 10. 16. 경 평택경찰서의 지휘 아래에 있던 청북지서와 치안대에 의해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의 주민들이 집단희생 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의 조사결과 최소 15명 이상의 청북면 주민들이 인민군 점령 기에 부역 혐의로 평택경찰서 청북지서와 그 지휘를 받는 치안대에 의해 청북지서 뒷산에서 집단총살당한 것으로 확인, 2008. 6. 30.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모두 15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최영학 등 7명</li> </ul>	
	강화지역 (강화도·석모도·주문도) 민간인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석만 등 28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중인 1951. 1·4후퇴를 전후한 시기 군경의 지원을 받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 가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에서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살해하였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강화향토방위특공대' 가 강화군의 12개면에서 부역자 및 부역혐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사실을 확인, 2008. 7. 8.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430여명 이상으로,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윤기항 등 139명</li> </ul>	
군경토벌 관련 사건	나주동박굴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일 등 27명의 신청인은 2006. 3. 20. 한국전쟁 시기인 1951. 2. 26. 정오경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주민 28명이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인민군 점령시기의 부역혐의와 수복 이후의 빨치산 협력혐의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총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부역 및 빨치산 협력여부 확인과정 없이 입사자 가족과 부역혐의자를 임의처형한 것으로 확인, 2007. 4. 17.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2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명예회복</li> <li>재발방지</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나주동창교 민간인집단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병수 등 20명의 신청인은 2006. 3. 22. ~ 23. 한국전쟁 중이던 1951. 1. 20.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되었다면서 진실 규명을 요청</li> <li>위원회는 당시 미수복지역인 이사건 지역 주민들이 공비들에게 포섭되거나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적법절차 없이 집단총살당한 사실을 확인, 2007. 6. 12.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명으로 추정, 확인된 희생자는 3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명예회복</li> <li>재발방지</li> </ul>
	문경석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의진 등 28명의 신청인은 1949. 12. 24. 정오 무렵, 경북 문경군(현 문경시) 산북면 석달리를 앞 논과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 주민 86명이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 소속 군인 70여 명에 의해 이 당시 석달리를 주변에 출몰하고 있던 공비들(또는 빨치산들)에게 음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단 총살되었다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위 사실을 확인하여 2007. 6. 26.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김영춘 등 8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명예회복</li> <li>위령사업</li> </ul>
	함평11사단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병량 등 84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11. 20. 경부터 1951. 1. 14. 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해보·나산면과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랑면 덕림리 및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인근지역에서 민간인 249명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집단 총살되었다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국군의 빨자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재판 등의 절차없이 집단학살된 것으로 확인, 2007. 7. 3. 진실 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노방주 외 248명, 부상자는 정남숙 등 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국기원호</li> <li>사망사실 기재</li> <li>가족등록부 정정 등</li> </ul>
	나주경찰부대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세열 등 53명의 신청인은 1950. 7. 하순, 전남 해남군 해남읍·마산면·현산면 및 완도군 완도읍·소안면·노화읍 등지에서 주민 97명이 후퇴 중이던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위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2007. 10. 23.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해남군의 경우 이원암 등 55명, 완도군의 경우 4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명예회복</li> </ul>
	함평양림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형기 등 27명의 신청인은 1949. 9. 21. ~ 22.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에서 마을 주민 28명이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유격대원들에 의해 집단 사살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유격대가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마을주민을 공비로 오인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확인, 2007. 10. 23.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임연화 등 2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호적정정</li> <li>역사기록 수정</li> <li>편화인권 교육강화</li> <li>관련법률정비</li> </ul>
	고창월림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병순 등 14명의 신청인은 1951. 5. 10.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도곡리 시목동 옆 계곡과 봉암산 계곡에서 마을 주민 89명이 공비토벌의 임무를 띠고 있던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 제3중대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이 사건부대 지휘관 김용식이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세력 및 천씨일가에 의해 희생된 김씨일가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월림마을 천씨일가를 집단살해한 것으로 확인, 2007. 11. 20.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는 89명임</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군경토벌 관련 사건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맹근 등 132명의 신청인은 1949. 7. ~ 1950. 1.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단성면, 하동군 옥종면에 거주하던 129명의 주민이 산청군 시천면 신천국민학교, 삼장면 가막골 등에서 지리산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있던 국군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며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사실을 확인, 2007. 11. 20.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는 정태인 등 129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명예회복</li> <li>관련기록수정</li> <li>평화인권교육강화</li> <li>관련법률정비</li> </ul>
	영암구립첫포위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재상 등 65명의 신청인은 1950. 10. 17.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 주민 44명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영암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사살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영암경찰서 경찰이 구림지역 공비토벌과정에서 비무장 상태인 이 마을 주민을 좌의세력으로 오인하여 집단사살한 사실을 확인, 2007. 11. 27.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는 박명재 등 44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명예회복</li> </ul>
	고창지역 11사단 민간인 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동표 등 139명은 1950. 12.부터 1951. 3.까지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 273명이 공비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총살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고창군 일대의 피난민 및 지역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간주되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 및 8중대로부터 집단사살당한 사실을 확인, 2008. 4. 14. 진실규명 결정</li> <li>확인된 희생자는 273명</li> </ul>	
	함평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순자 등 39명은 1950. 10. 22.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월야면 일대에서 지역 주민 51명이 함평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제11사단 제20연대 제3대대와 제2대대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위 신청사실을 확인하여 2008. 4. 8.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52명, 부상자는 이의범 등 2명</li> </ul>	
	전남동부지역 민간인희생사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순남 등 25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당시 928 수복 후부터 1952. 3. 사이 구례, 광양, 여수, 보성, 고흥, 곡성, 순천 지역에서 경찰과 경찰토벌대, 국군이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자를 처벌하면서 일부 민간인을 '부역자', '빨치산 협조자' 또는 '통비분자'라는 이유로 적법 절차 없이 사살하거나 가옥에 가둔 채 불을 질러 살해하였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위 신청사실을 확인, 2008. 6. 24.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는 구공암 등 35명</li> </ul>	
	해남군 민간인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연제 등 123명의 신청인은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해남군 주민들이 좌의,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및 우익단원에게 적법절차 없이 살해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위 신청사실을 확인, 2008. 7. 8. 진실규명 결정.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li> <li>평화인권교육강화</li> </ul>
	청도민간인희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재현 등 128명의 신청인은 양쾌환 등 수백 명이 1949. 2.부터 1951. 2.까지 군경의 공비토벌작전 및 예비검속에 의해 청도군 매전면 곰티자를 비롯해 경산시 폐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청도경찰서, 국군 제3여단 제6연대 1대대 12중대, 국군 호림부대 청도파견대, CIC 청도파견대, 22연대 추정 현병대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 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의 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 2008. 7. 8. 진실규명 결정</li> <li>확인된 희생자는 양쾌환 등 13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li> <li>평화인권교육강화</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여순사건	구례지역여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찬근 등 146명의 신청인은 박덕서 등 15여명이 여순 사건 직후인 1948. 10. 말경부터 1949. 7. 사이, 구례군 일대에서 국군 제3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구례경찰서 경찰에 의해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위법하게 사살당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위 사실을 확인, 2008. 7. 8.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는 800여명으로 추정 확인된 희생자는 16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위령사업</li> <li>명예회복</li> <li>역사기록반영</li> <li>평화인권교육강화</li> </ul>
	단양곡계굴미군폭격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한원 등 53명의 신청인은 1951. 1. 20. 수백 명의 민간인이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소재 곡계굴에서 피신하고 있던 중 미7사단 제17연대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미 전투폭격기의 폭격으로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미35전투요격단 및 미49전투폭격단 예하 제7, 제9전투폭격대 소속 F-51기 및 F-80기 11대(또는 13대)의 폭격 및 기총소사에 의해 피난민들이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 2008. 5. 20.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200여명을 상회. 확인된 희생자는 167명</li> </ul>	
	예천산성동 미군폭격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태기 등 30명의 신청인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 1. 19.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에서 주민 50여 명이 인민군이 결집했던 예천 일대에 대한 지역폭격전략 과정에서 폭격목표 선정상의 오류 또는 정찰의 소홀에 따른 미군폭격으로 사망하였다며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미 187공수연대가 산성동을 비롯한 예천 일대에 폭격 요청에 따라, 제5공군 소속의 6147 전술통제비행편대의 모스키토(정찰기)와 전폭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 2007. 11. 13. 진실규명 결정.</li> <li>확인된 희생자는 안인모 등 51명</li> </ul>	
미군관련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인덕 등 37명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9. 10. 인천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이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들의 인천 월미도에 대한 집중폭격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VMF-214, 323)들이 월미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격작전을 실시 하던 중 민간인들이 집단살상된 사실을 확인, 2008. 2. 26. 진실규명 결정</li> <li>희생자는 100여명까지 추산. 확인된 희생자는 정용구 등 10명</li> </ul>	

### 3. 인권침해 사건

〈표 3〉 진실규명 유형별 분류

유형	사건명	비고
확정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월남자 관련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월북 친척 관련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관련	태영호 납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간첩 조작의혹 사건
	재일교포관련	신귀영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내정치 및 시국관련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오송회 사건 아람회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오종상 간급조치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불법구금· 고문·사망	김익환 일가 고문·기혹행위 사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1980년 사북사건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기타	CID 수사관의 기혹행위에 의한 사망의혹 사건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현납 의혹 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제23·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사건 요지〉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월남자 관련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배경옥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은 1967.3.22.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한 후 중정 판단관으로 근무하다가 1969.1.27. 처조카 배경옥과 함께 출국,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1.31. 베트남 사이공 공항 기내에서 중정 직원에게 체포, 한국으로 입송되어 위장귀순 후 국가기밀팀지 및 국가기밀 누설, 짐입탈출 등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69.5.10. 사형을 선고 받고 7.2. 사형 집행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증정의 불법구금 확인, 이는 형법상 불법감금죄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li> <li>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하고 2006.12.19. 진실규명으로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피해구제</li> <li>재심</li> </ul>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준호는 월북하면 제공하기 위하여 최전방을 배회하며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국방경비법 제33조 간첩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육군제26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 후 가석방 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각 해당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li> <li>특무부대 불법감금, 가혹행위 및 허위자백에 근거한 군검찰 기소와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11. 7. 진실규명 결정.</li> </ul>	
확정 판결 (국가 보안법위반)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준호와 그의 모(母) 배병희는 1985.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간첩 방조, 국가기밀 등의 혐의로 이준호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배병희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형을 각각 선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2006. 5. 17.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경 대공분실에 불법연행, 불법강금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li> <li>수사기관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8. 12. 19. 진실규명 결정</li> </ul>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5 전쟁기에 월북한 박양민의 외조카 김정인, 외종 10촌 석달윤, 여동생 박공심, 동향친구 장제영 등은 박양민과 접선하여 간첩행위 및 불고지, 편의제공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김정인은 사형, 석달윤은 무기징역 등 중형 처벌 받은 사건에 대해 석달윤 외 3명은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사건이 허위 조작되었다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확인, 이는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 해당</li> <li>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6. 26. 진실규명 결정</li> </ul>	
김기삼 간첩 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은 1980. 12.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되어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어 198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1983. 11.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2006. 7. 4. 진실규명 신청		
	위원회 조사결과 안기부 광주분실에 불법 감금된 사실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조작, 위법한 확정판결 확인, 2008. 2. 12. 진실규명 결정.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확정 판결 (국가 보안법위반)	남북어부 관련	태영호 남북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대광 등 5인의 신청인은 태영호 선원들이 1968. 7. 3.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漁勞)작업을 해 반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부안경찰서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사실 확인, 2000. 12. 5. 진실규명 결정.</li> </ul>
		남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 부안군 위도 섬에 거주하는 남북귀환어부 강대광은 귀환한 지 10년 뒤 군사기밀을 탐지 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친구 5명은 강대광과 탈출을 예비하거나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 이들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기소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대광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사람들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형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허위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6. 19.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다.</li> </ul>
		남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창덕은 1967. 남북되었다가 귀환하였는데, 그 17년 뒤인 1984. 별다른 혐의도 없이 전주 보안대에 연행되어 수사받은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2006. 1. 23.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전주보안대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허위자백에 의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11. 27. 진실규명 결정</li> </ul>
	정심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남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심근은 남북귀환 어부로 북에서 풀려난 직후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16년 뒤 다시 전주보안대에 연행되어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2006. 1. 23.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전주보안대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422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허위자백에 의한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 위반한 유죄판결 등 위법행위 확인, 2008. 9. 18. 진실규명 결정.</li> </ul>
		남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진기 등 5명의 신청인은 남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6명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의 조사결과 거제경찰서, 전주대공분실, 등수사기관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li> <li>허위자백에 의한 기소 및 재판부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8. 6. 18.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다.</li> </ul>
	재일교포 관련	신귀영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귀영 등은 1965.부터 1979. 사이에 일본을 왕래하며 재일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 탐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80. 10. 15. 부산지법에서 유죄를 받고 만기출소한 사건에 대해 2006. 1. 10.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부산시경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간첩행위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1. 23. 진실규명 결정</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재일교포 관련	차풍길 간첩조작의혹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풍길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1976. 6. 중순~1979. 3. 중순 동안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2차례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1982. 8. 7.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뒤 66여 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 차풍길은 강압수사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라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안기부의 불법구금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 해당</li> <li>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임의성 자백에 의한 무리한 기소,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6. 19. 진실규명 결정</li> </ul>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이장형은 자신이 불법체포, 장기간 불법구금 및 강압적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간첩 등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수사과정에서 치안본부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피해자의 허위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8. 5. 20. 진실규명 결정</li> </ul>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김양기는 자신이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진술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광주보안대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통한 간첩행위 조작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 위반확인, 2008. 6. 23. 진실규명 결정.</li> </ul>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조용준은 조용수가 1961. 2. 13. 민족일보를 창간해 진보적 입장에서 언론활동을 벌이다가 5.16 후 군부에 의해 구속된 뒤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 후 저형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는 합동수사본부의 불법감금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 해당</li> <li>재판과정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소급적용, 증거재판주의 위반확인 2006. 11. 28.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재심</li> </ul>
국내 정치 시국관련	오송회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9명은 1978.부터 1982년에 걸쳐 북한과 국외공산계열을 친양하고, 반미 및 반정부 발언을 했으며, 이적단체인 '오송회'를 결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198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 같은 해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2. 2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전북도경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li> <li>재판과정에서 허위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7. 3. 진실규명 결정</li> </ul>	
	이람회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해전 등 11명은 금산, 대전 등지에서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로 생활하면서 동창생 관계 등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목모임을 가짐. 이들은 1980. 5.~1981. 7. 사이 친목모임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한 대화 내용을 빌미로 대전경찰서에 연행되어 구속된 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친양고무 등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충남도경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및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재판부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7. 3. 진실규명 결정</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확정 판결 (국가 보안법위반)	진보당 조봉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조호정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 5. 15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 5.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불법 감금하여 재판을 통해 처형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특무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직권남용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 해당</li> <li>재판과정에서 허위자백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등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7. 9. 18.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재심</li> <li>독립유공자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김용준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던 자신 등이 친구 김 아무개가 간첩인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읍경찰서에 연행된 뒤, 불법감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방조와 친양고무, 불고지죄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정읍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확인,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li> <li>재판과정에서 허위자백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등 증거재판주의 위반 확인, 2008. 3. 11. 진실규명 결정</li> </ul>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사건		
	오종상 긴급조치위반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종상은 1974. 5. 17.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정부 사책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1주일간 감금된 채 긴급조치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받고,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2007. 7. 10. 직권조사 결정</li> <li>위원회는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발언의 확대 왜곡, 위헌적 긴급조치에 의존한 기소 및 재판을 확인, 2007. 10. 30. 진실규명 결정</li> </ul>	
	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 4. 26. 발생한 명지대 강경대 학생 치사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면서 분신배후세력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1991. 5. 8. 김기설이 분신사망하자, 경찰은 김기설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유서 대필자를 수사하여 강기훈을 지목,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법원이 유서대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당시 기소 및 재판의 기초가 강기훈의 필적을 국가수 및 7개 사설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유서와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 2007. 11. 13. 진실규명 결정</li> </ul>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섭은 1972. 9. 27. 20:50경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에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간부의 9세 된 딸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경찰의 증거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2007. 11. 20. 진실규명 결정</li> </ul>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이정근은 5.18 시위과정에서 일어난 박문규 상해치사 조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 사건의 주모자로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영암경찰서의 불법감금,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해당되며, 목격자의 진술에 의지한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재판주의 위반한 것으로 확인 2008. 6. 18. 진실규명 결정.</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확정판결 (비 국가 보안법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무섭 등 156명의 신청인은 자신의 선친들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2-2 일대의 땅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 분배받아 경작하고 있었으나 5·16 이후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단 등을 조성하면서 선친 등을 쫓아냈고,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불법체포 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억압하고 공무원 등의 위증을 동원 소송사기범으로 조작 처벌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국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증언 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등 확인, 2008. 7. 8. 진실규명 결정</li> </ul>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김기웅은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거주하던 김익환 등 일가 3명이 1971. 9. 중정 여수출장소 소속 요원들에게 간첩 관련 혐의로 강제 연행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국가의 불법연행,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확인, 2006. 11. 28.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후유증 치료</li> </ul>
1980년 사북사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1. 11. 말경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중정이 수사분실로 사용하던 옛 고양군청 소재의 건물에 20여 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1961. 12. 24. 상오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로부터 17일 후 1962. 1. 10.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 이후락은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이 북괴 간첩으로서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하였다"고 발표한 사건에 대해 박이건은 2005. 12. 12.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국가의 가혹행위 사실 미확인, 다만 국가가 피해자를 간첩으로 단정한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인격권 침해사실 확인, 2007. 11. 20. 일부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간첩단정기록 삭제</li> </ul>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최순영은 1979. 8. 11. 신민당사에 농성 중이던 YH노조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김경숙이 사망하였으나 국가권력은 그 사망경위를 은폐하였으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들과 신민당 관계자, 언론인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가 YH노조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 관련자들의 불법적 인권침해 확인, 2008. 3. 13.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허위기록 삭제</li> </ul>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 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주민들이 노조지부장 사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여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으나 1980. 4. 24. 노·사·정 대표간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 사태 해결에 합의 하였음에도 1군 계엄사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은 1980. 5월 6.부터 같은 해 6. 17.까지 200여명의 주민들을 정선경찰서에 연행, 구금하고 물고문과 성적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국가의 위법한 가혹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 확인, 2008. 4. 8.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의 부 이홍묵은 광주교육대학교 재학생 이기표가 학생군사교육단(RNTC) 군사교육을 위해 육군 31사단에 입소하여 1977. 7. 27. 유격훈련을 받다 열사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군 당국의 위법한 열차려, 무리한 훈련실시 및 부실한 응급구호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확인, 2008. 5. 6.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조치</li> </ul>

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권고내용
불법구금· 고문·사망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정옥수는 육성태가 권총을 습득, 처분하려 했던 사실과 전혀 무관함에도 1951.경 CID 수사관으로부터 권총의 행방에 대해 추궁을 당하면서 폭행, 협박, 위협사격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장파열로 의심되는 상해를 입고 약 일주일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CID의 가혹행위 및 위법한 국가공권력 행사 확인, 2008. 7. 2.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회복</li> </ul>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현납 의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 이영우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 재건최고회의는 김지태를 혁명사업에 비협조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현납하게 만들었다면서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중앙정보부의 수사권 남용 및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 확인, 2007. 5. 29.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손해배상</li> </ul>
기타	재일교포 복송저지공작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9. 이승만 정권(내무부)은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 용군 동지회 회원 41명을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재일교포복송 저지공작원으로 선발, 일본으로 밀파했으며, 밀파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들이 조난당하고 24명의 공작원들은 도일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기까지 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방치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li> <li>위원회는 그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작원을 선발·교육시켜 밀파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확인, 2007. 4. 3.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명예회복</li> <li>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li> </ul>
	제23·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상한 등 9명의 신청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 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신상한 등 10명이 제23회(1981년) 및 제24회(1982년)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요청</li> <li>위원회 조사결과 총무처장관의 불합격 처분은 직권남용 및 공무담임권과 응시자 평등권 침해 한 것으로 2007. 9. 18. 진실규명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사과</li> <li>불합격 취소</li> </ul>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경과와 과제

김호철

### I. 들어가며

얼마 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고 함)가 금년 말로 폐지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한 진정인이 새벽녘에 온 몸이 마비되고 언어기능도 상실한 채 눈만 깜박이는 증상에 빠져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999년도 육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소총수로 복무 중 허약체질 등에 따른 군복 무염증으로 자살했다고 처리된 이동병 병사의 어머니이다. 현재 근육마비는 풀렸으나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중세가 일정시간 반복되거나 의식이 아들 사망 당시로 되돌아가 국방부나 청와대 인사에게 전화를 한다며 한동안 가상의 상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겠다며 무작정 밖으로 나가 배회를 하는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앞으로 아들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아이들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다고 한다. 병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폐쇄병동 입원을 권하지만 가족들은 좀 더 안정적 분위기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며 일반병동에서 진정인을 24시간 필사적으로 돌보고 있다.

위 진정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 진정한 유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과거 군에서 사망한 분들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지만 위원회가 직접 대면하는 상대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병을 얻은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모를 비롯한 한 맷한 유가족들이다.

위원회에 대한 유가족들의 호소는 애절하고 초조하다. 처와 7살 난 아들을 두고 6.25 전쟁에 참전한 후 제대를 앞두고 거제 포로수용소 철거·정리를 담당한 공병대 소속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35세 늦깎이 병사는 배를 타고 섬 주변을 수색하다가 소총을 잊어버리자 자살했다는 짧은 비보와 함께 유골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 병사의 아들은 홀로 농사를 지으며 모친 풍상을 겪은 82세 어머니의 한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가족을 훌대했던 국가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50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의 첫 마디는 “육본에 가서 자살하고 싶어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서 어디 한 번 물어보려고 해도 말도 안 붙여 줘요. 누가 좀 듣기라도 해주었으면 이렇게 안 얹을해요”라는 것이었다. 쇠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눈물범벅이 되어 “들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과 함께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자 살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는

진정인의 탄식을 누군들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애절한 사연과 탄식이 담긴 사건이 아직 305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정부가 주도한 과거사 위원회들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집권 초기부터 확고히 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폐지하고 잔여사무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위'라 함)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하여 과거사 위원회 일각에서는 군의문사는 현재진행형의 민원업무이므로 고유한 과거사 정리업무와 하나로 합치는 것은 과거사 정리 고유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위원회를 연장하거나 잔여사무를 일반 부처의 민원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두 입장은 군의문사 잔여사건을 기능적으로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데에서 견해차를 보일뿐 우리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다 종결할 때까지 존립하여야 할 고유한 근거나 필요성에는 별로 없다는 데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당초 예상했던 300여건의 두 배에 이르는 600건 진정을 받아 3년 가까이 군의문사 문제 해결에 온 정열을 쏟았던 우리 위원회는 고유한 정체성이나 역사적 의미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름처럼 그야말로 의문사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은 3년 동안 부족하나마 상임위원의 중책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시름해온 필자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잠시 당혹감을 접어두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의 바람직한 진로에 대하여 여러분의 조언을 청하고자 한다.

## II. 활동내용

### 1. 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기조

특별법의 목적, 다시 말하여 특별법이 우리 위원회에 부과한 사명은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라'는 것이다. 한편, 600건 진정의 취지를 거칠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군대만 가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내 아들·남편·형제·동료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군 복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데려갔으면 데려간 그대로 돌려보내주어야지. 국가가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런 국가를 믿었던 내 자신도 용서되지 않는다.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법적 사명과 진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기조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두고 1년여 동안 위원 워크숍과 전 직원 숙박교육 및 수시토론을 통하여 고민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조사의 원칙'과 '결정의 원칙'에 도달할 수 있었다.

조사의 원칙은 "유가족의 몸과 마음으로(유가족의 신뢰와 공감) 조사하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3자의 공감을 얻는다(결과의 전문성과 보편성)."는 것이고, 결정의 원칙은 "사실판단에는 에누리가 없고 법적 평가는 억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군 의문사의 대다수는 유가족의 주관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생성되는 것이고 그 의혹은 과거 군 사망 사건의 조사주체 혹은 조사절차나 조사내용 및 결과의 전달방식이 유가족의 불신을 초래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의 제1의 원칙은 유가족의 높은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가족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어야 했다. 다만, 국

가기관으로서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누구를 상대로든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을 포함하여 위원회 이외의 그 어떤 제3자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전문성이 녹아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의 회복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 단지 사망의 진상이 어떻다는 사실판단과 그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의 회복은 결국 현행 실정법과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기관이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실정법적 근거와 그에 대한 법해석 논리에 사실상 기록되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행 실정법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는 유가족의 문제는 국가유공자법 등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고양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 2. 위원회 주요활동 현황(2008. 10. 17. 현재)

#### (I) 조사활동 현황

##### ① 총괄

○ 우리 위원회는 출범 후 1년 동안 총 600건의 진정을 접수해서 2008. 10. 17. 현재까지 295건을 종결(처리율 49%)했고,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305건이다. 참고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문 작성과정에 있는 사건이 19건이므로 실제 종결단계에 있는 사건은 314건이다.

○ 종결된 295건 중 진상규명 결정은 95건(전체 종결 사건 대비 32%)이고, 진상규명불능 결정은 13건, 기각 결정은 43건, 각하 결정 11건이고, 조사개시결정 이전의 사전조사결과를 납득하고 진정을 취하한 사건(소위 취하사건) 72건, 조사개시 결정 후 조사결과를 납득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원치 않아 진정을 취하한 사건(소위 종료사건) 58건으로 도합 130건(전체 종결사건 대비 44%)은 과거 군의 조사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종결 되었다.

〈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단위: 건)

구분	합계	종결처리					진행중	
		소계	진상 규명	규명 불능	기각	각하		
진정접수	600	295	95	13	43	11	133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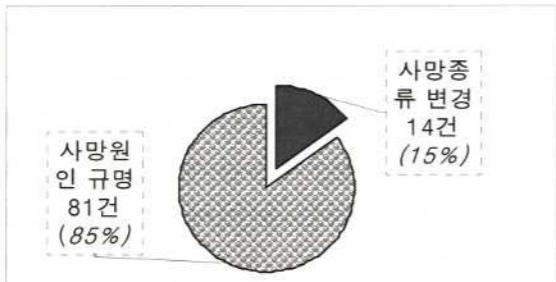
\* 종료 등은 종료 58건, 취하 72건, 중복병합회송 각 1건

○ 10년 이상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조사기록이 폐기되고 일부자료들만 이곳저곳에서 파편화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이런 자료들을 찾고 행적이 묘연한 관련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자살로 처리된 사건(총 600건 중 59%인 356건)의 경우에는 진정인의 불신과 의혹이 깊고 완고하여 광범위하게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인체공학적 실험 및 분석, 정신과 진단 및 심리분석 등의 과학적 분석기법까지 동원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② 진상규명 결정 분석

### ▣ 진상규명 결정의 유형과 내용

○ 95건의 진상규명 결정 중 사망의 실제적 경위와 원인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은 81건이고, 사망의 종류(타살, 사고사, 병사, 자살 등)가 다르게 규명된 사건은 14건으로 전체 15%를 차지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진상규명 결정유형

○ 사망의 종류가 변경 된 14건의 세부내역은 <표 2>와 같이 과거 군 수사결과 사고사병사로 처리된 8건이 타살(폭행치사)로 밝혀졌고, 자살이나 기록이 없어 불명인 4건은 모두 사고사로 밝혀졌고, 단순 사고사 2건은 전사로 확인됐다.

<표 2> 사망종류 변경 사건 세부내역(단위: 건)

과거 군수사결과		위원회 조사결과	
사고사	6	타살 규명 (폭행치사)	8
병사	1		
기록없음	1		
자살	3	사고사	4
기록없음	1		
사고사	2	전사	2
총계	14		

○ 또한, 사망의 경위와 원인이 새롭게 규명된 81건 중 개인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치부됐던 자살사건 45건은 구타와 가혹행위, 관리 소홀 등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이 규명되었다. 단순 병사로 처리됐던 15건과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19건 역시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이 규명되었다(<표 3> 참조)

<표 3> 사망원인 규명사건 세부내역(단위: 명)

과거 군 수사결과	건수	위원회 조사결과
총 계	81	
단순 자살	45	직무기인성 인정된 자살
단순 병사	15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단순 사고사	19	공무관련 사고사
타살(본인과실)	1	타살(타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사망)
사고사	1	사고사(국가유공자 재심의 요청)

### ▣ 진상규명 결정 사건 사망자의 소속계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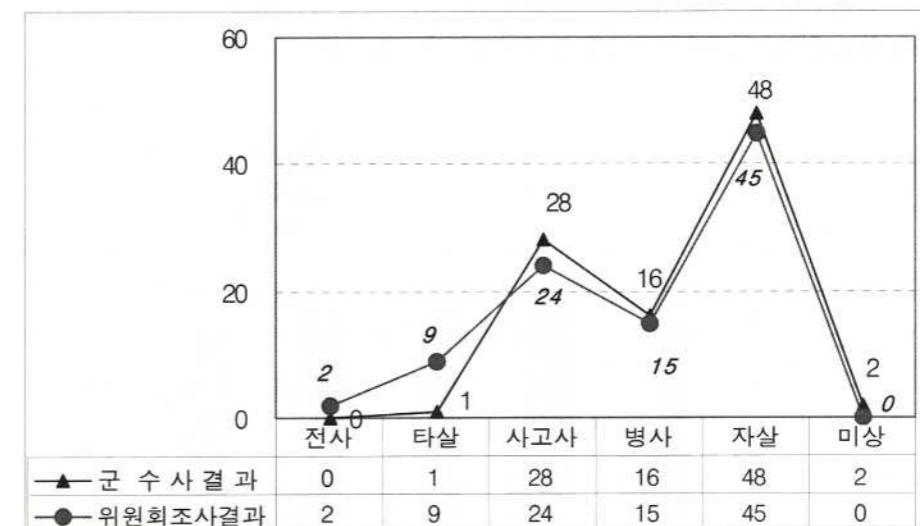
<표 4> 계급별 현황(단위: 건)

소속별	계급별	합계	장교	부사관	병
	소속별	합계	장교	부사관	병
합계	95	6(6%)	14(15%)	75(79%)	
국방부	83	6	14	63	
법무부	2			2	
경찰청	10			10	

○ 진상규명 결정된 95건의 사망자의 계급별 분포는 병이 75명(79%), 부사관 14명(15%), 장교는 6명(6%)이다. 또한, 소속별로는 국방부가 83건(87%), 경찰청은 10건(11%), 법무부가 2건 이다.

### ▣ 과거 군 수사결과와 위원회 조사결과의 차이

○ 진상규명 결정된 95건을 살펴보면, 과거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에서 처리한 사망의 종류는 [그림 2]와 같이 자살 48건, 사고사 28건, 병사 16건, 미상2건, 타살 1건임에 반해, 위원회 조사결과는 자살45건, 사고사 24건, 병사 15건, 타살 9건, 전사 2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과거 군 수사결과와 위원회 조사결과 차이

### ③ 위원회 결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조치 현황

○ 우리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사망구분 재심의(순직 등)를 요청한 사건은 총 80건으로,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33건(수용률 40%)이며, 수용하지 않은 것은 24건(29%),

심의 중인 것은 26건(31%)이다.([표 5] 참조)

○ 주목할 것은 경찰청(전경·의경)과 법무부(경비교도대)의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6건의 사건들(경찰청 5건, 법무부 1건)에 대해서 과거의 결정을 뒤집고 순직을 인정한 반면, 국방부의 경우 사망구분 재심의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 사건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이다. 동일·유사한 사안을 두고 국가기관 간 서로 다른 조치를 내려 국민의 법적이익에 명백한 차별이 생기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 한편,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청탁을 한 경우는 모두 12건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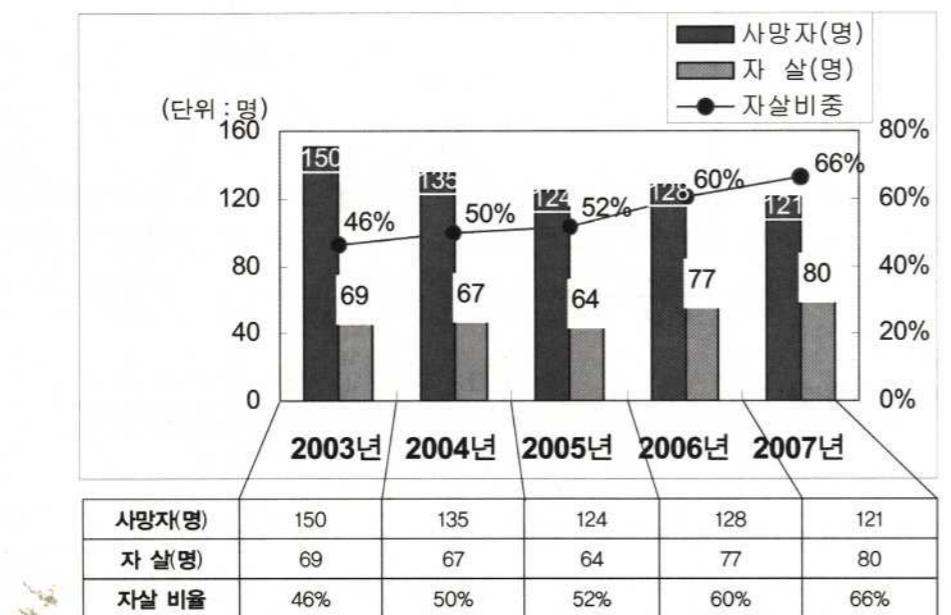
〈표 5〉 각 기관의 사망구분(순직 등) 재심의 처리 현황(단위: 건)

처리현황 요청기관	계	수 용		심의 중
		불수용	심의 중	
계	83(100%)	33(40%)	24(29%)	26(31%)
국방부	74	27	22	25 (국가배상:2건)
경찰청	7	5	2	0
법무부	2	1	0	1

※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는 12건임

#### [참고] 최근 5년간(2003~2007년) 국내 사망사고 및 자살 추이

○ 최근 5년간의 군 사망 및 자살사고 추이를 보면 <그림 3>과 같이 사망자 수는 줄고 있으나, 자살사고의 수와 비중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군이 병영시설과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책 등을 적극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사망사고는 꾸준히 줄여 나가고 있으나, 자살의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 (2) 유가족 예우를 위한 활동

##### □ 국립묘지 합동 안장식 거행

○ 우리 위원회는 2008. 6. 19.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군경 의문사 희생자 14위 합동안장식’을 거행하였다. 과거 단순 자살로 처리되었다가 위원회의 순직 전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한 5명 등 자살 순직자 8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진정되었던 14위의 순직 영령을 국립묘지에 합동 안장한 것이다. 이 행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유가족들에게 신원과 명예회복의 방도로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실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합동안장식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2008. 3.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전 국립묘지법은 자살자를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안장 제외대상을 “군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법 제5조 제3항 제2호)으로 정하고 있어 자살자라도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자살자라도 각 군 본부 및 해당부처에서 ‘순직’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우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위원회가 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자살자를 국립묘지 안장 또는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완고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보인다.

○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영령은 총 21위에 달한다.

##### □ 유골 발굴 및 미인수 시신 장례 등

○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잃어버렸던 고인의 매장지와 유골을 추적, 발굴하여 유전자 감식 등 조사를 하고 유가족에게 그 유골을 인계하였다.

○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유족이 군 냉동고에 그대로 시신을 둔 채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는 21건, 군으로부터 유골을 인수하지 않거나 자가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24건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한 사건에서 망인의 어머니인 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내용은 믿을 수 있다며 조사종결 이전에라도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혀 소속 부대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장례를 집전했고, 다른 한 사건에서는 아들의 유골을 집에서 보관해 오다가 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경찰청에서 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 □ 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실시

○ 유가족단체는 공동으로 2007년과 2008년 6월에 우리 위원회 진정사건 600위의 위패를 모시고 영령을 추모하고 군의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위원회는 예산을 수립하여 이 행사를 공식 후원하였다.

### (3)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 □ 군 자살자 예우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60%가 자살로 처리된 사건인데, 경찰청의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군은 자살자에 대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예우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실정법상 자살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군 의문사 해결의 핵심이 군 자살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우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창립 첫 해인 2006. 11. 28.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2007. 9. 18.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이라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두 토론회는 군 자살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법리를 확장시키고 실정법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다음으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 11. 8. 대통령 비서실 주관으로 우리 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에 따라 2007. 12. 13.부터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와 사전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정례회의는 군의문사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정하여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는 자살자라도 해당 부처에서 순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조기에 발의하였고, 국방부로 하여금 자살자를 무조건 순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정례회의는 3회

이상 진행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중단되고 말았다.

○ 2008년 3월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자살자라도 해당 부처에서 ‘순직’으로 구분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앞서 본 것과 같이 8위의 ‘자살-순직자’가 국립묘지에 합동 안장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에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 한편,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국방부 내에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17대 국회의 폐막으로 무산되었고, 국방부의 실무 작업은 최근에 모종의 이유로 좌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sup>1)</sup>

#### □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활동

○ 군의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 해외 각국(영국, 미국, 대만 등)의 군의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사례, 군 사망사고 처리절차의 문제점 등에 관한 조

사연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 □ 유가족 피해(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

○ 군의문사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가름하고자 진정사건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했고, 이 조사를 통하여 유가족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외상에 대한 사후 개입과 보호조치가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 등 개입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4) 사법부 등 권리구제기관에서의 진전 양상

#### □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진전

○ 책임범위의 확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원회 진정 제114호 사건의 유가족이 의경으로 방범순찰대에서 복무하던 망인이 선임 의경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자살)하였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참고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sup>2)</sup> 이 판결은 그 이전의 판결들이 구타, 가혹행위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 국가의 책임범위를 20~30%로 한정해왔으나 위원회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높인 첫 사례로서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국가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 소멸시효 장벽의 완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진정 제1호 사건의 유가족이 특공연대 통신병으로 배속되었던 망인이 선임병들의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군내 부조리 때문에 사망(자살)하였다며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국가가 14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것에 대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산하 의결기구인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는데, 위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 등을 모두 갖춘 명망가들”임을 전제하면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후 진상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진상규명 결정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결인 점, 진상규명 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부정확하고도 일방적인 군 내부의 자체 조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진상규명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그 의결과정에 관여한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가볍게 뒤집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3)</sup>

####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의 진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정심판위원회는 진정 제47호 사건의 진정인이 ○○교도소 경비교도 대원으로 전입한 아들이 4일 만에 “선임대원들의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순직에 해당 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과 법무부의 후속 순직 결정<sup>4)</sup>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가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sup>5)</sup>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부 2008. 4. 17. 선고 2007가합103012판결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부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판결

4) 2007. 2. 26.자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 전공사 심사 의결서에는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조사된 증거에 기초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재 이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실에 기초할 때 공무수

1) 2008. 10. 12.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은 위법 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군복무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 할 수 없는 사유로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중략)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교도소 경비교도대는 전국 경비교도대들 중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근무 분위기가 나빠서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 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 및 일반 군부대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인의 절망감과 우울증상을 극도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선임병의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자살자를 경위 불문하고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국방부의 자살자에 대한 전공사상 심의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진상규명활동의 몇 가지 의의

#### (1)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 사망사고의 연관성 확인

우선 창군 이래 군 사망사건 및 자살처리사건의 수를 군에서 발표한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통계와 통계청

행과 자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고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전입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점, 만성적 우울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급격한 우울증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최근의 유사 판례를 참작할 때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의한 경비교도대의 업무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통상적으로 경비교도는 외정문, 정문, 감시대, 구외작업, 출정 등 간접체포 근무개소에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경비교도의 업무와 무관한 미루나무 제거작업에 경비교도대원 특히 신입대원까지 동원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영농장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한 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다향의 식사강요, 가혹행위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우울증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그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그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 제 149조에 규정된 별표 20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전공상으로 인정 순직으로 조치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 요청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보훈심사위원회는 의학자문 소견상 군복무기간 중 군복무와 관련한 ‘우울증’의 발병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동 질환에 대한 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4일 만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이 군 공무 중 특별한 외상력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을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다.」

에서 발표한 자료를 합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일반 자살과 군 자살의 비교(단위: 명)

년도	전체 사망자수	전체 자살 사망수	전체자살 사망률 (10만명당)	군 사망자수	군자살 사망수	군자살 사망률 (10만명당)
1980				970	391	78.6
1981				806	362	84.6
1982				692	276	75.6
1983				675	179	68.6
1984				789	278	73.7
1985	246,121	3,688	11.5	721	225	34.6
1986	244,782	3,457	11.2	653	260	40
1987	248,997	3,301	10.5	619	176	27
1988	239,926	2,947	9.2	538	190	29.2
1989	243,576	3,622	9.4	453	158	24.3
1990	248,991	3,157	9.8	430	172	26.5
1991	249,588	3,066	9.1	355	129	19.8
1992	243,054	3,533	9.7	367	125	19.2
1993	240,468	4,123	10.6	343	129	19.8
1994	248,377	4,211	10.5	416	155	23.8
1995	248,089	4,840	11.8	330	100	15.4
1996	245,588	5,856	14.1	359	103	15.8
1997	247,938	6,022	14.1	273	92	13.3
1998	248,443	8,569	19.9	248	102	14.8
1999	246,539	7,075	16.1	230	101	14.6
2000	247,346	6,460	14.6	182	82	11.9
2001	242,730	6,933	15.5	164	66	9.6
2002	246,515	8,631	19.1	158	79	11.4
2003	245,817	10,932	24.0	150	69	10
2004	245,771	11,523	25.2	135	67	9.7
2005	245,511	12,047	26.1	124	64	9.3

\* 출처 : 통계청과 국방부 및 각 군의 통계자료를 혼합한 군의문사위 분석자료임.

위의 〈표 6〉을 보면 1980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15년 동안 군 자살사망률이 사회의 전체자살사망률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군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군의 사망자수가 많았다는 점과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군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군 사망자수는 문민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부터 300명대로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대폭 감소하여 200명대에서 100명대 중반까지 내려오고,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100명대 중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문민화 이후 국가와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은 군내부의 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 (2) 군 자살문제의 실상 확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와서 2005년 현재 26.1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병사 10만 명당 자살률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어 1985년 당시 전체 자살자 비율보다 2~3배 높던 것이 2005년 현재는 오히려 군 자살자 비율이 전체 자살자 비율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역전되었다.<sup>6)</sup>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나 사회 성원의 자살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한 구조로 변한 것과 달리 군 자살자 비율은 감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표 7> 통계는 우선 군 자살자 문제를 신세대 장병의 나약성이나 문화적 특성과 주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1950년 이후 군 사망사고 및 군 자살자(단위: 명)

년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사망자(명)	68,528	44,776	16,831	27,738	2,988	2,660	2,710	2,559	2,001	1,555
자살자(명)	6	18	34	51	45	60	18	34	51	45
자살/사망(%)	0.008%	0.04%	0.2%	0.18%	1.50%	2.25%	0.66%	1.32%	2.54%	2.89%
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사망자(명)	1,533	1,449	1,293	1,319	1,471	1,651	2,308	3,165	3,044	2,589
자살자(명)	271	246	215	284	263	338	351	448	531	546
자살/사망(%)	17.7%	17%	16.6%	21.5%	17.9%	20.5%	15.2%	14.1%	17.4%	21%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망자(명)	2,310	2,000	1,827	1,318	1,394	1,555	1,360	1,471	1,342	1,381
자살자(명)	440	393	316	298	355	484	448	459	360	365
자살/사망(%)	19%	19.7%	17.3%	22.6%	25.5%	31.1%	33%	31.2%	26.8%	26.4%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사망자(명)	970	806	692	675	789	721	653	619	538	453
자살자(명)	391	362	276	179	278	225	260	176	190	158
자살/사망(%)	40%	45%	40%	26.5%	35.2%	31.2%	40%	28.4%	35.3%	34.9%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망자(명)	430	355	367	343	416	330	359	273	248	230
자살자(명)	172	129	125	129	155	100	103	92	102	101
자살/사망(%)	40%	36.3%	34%	37.6%	37.3%	30%	28.7%	34%	41%	44%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망자(명)	182	164	158	150	135	124	128	121		
자살자(명)	82	66	79	69	67	64	77	80		
자살/사망(%)	45%	40%	50%	46%	50%	52%	60%	66%		

혹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징병절차를 통해 자살의 가능성 있는 정신적 취약 집단이 여과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무 행정 일선의 고충을 들어보면 1970~80년대에는 징병대상 인구가 부족하지 아니하여 현역복무율이 현재 보다 낮고(50% 내외), 따라서 비교적 우수한 자원이 징집되었는데 반해 현재는 전체 징병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병으로 징집됨에 따라 부적응이 예상되는 집단을 징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또한 병무청의 징집대상자 선별도 주로 신체검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무 부적응 예상 집단의 여과 작업이 그다지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과 우리 위원회 조사

6) 한국사회의 자살자 급증은 '장기 내수불황'과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극심히 진행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극심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확산 등 경제난에 따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OECD 기준인구로 국가별 연령구조 차이를 표준화한 자살률을 보면 한국사회는 26.1명이었고 평균 22.6명(2003년 기준), 일본이 20.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영국(6.3명), 이탈리아(5.6명), 스페인(6.7명) 등은 자살률이 10명을 밀돌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 자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주요한 변수는 군복 무환경 예컨대 병영문화의 폭력성, 비민주적 조직문화, 열악한 복무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전제 아래 자살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개인적 환경(성장과정, 가족환경, 사회적 지위)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군 복무환경의 개선이 자살자를 현저히 줄이는데 1차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군 사망사고 대비 자살자 비중을 보면, 2002년부터 50%대로 진입하여, 군 자살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전체 군 사망사고자 가운데 자살사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요한다.

한편, 1996~1998년까지 3년간 군내 자살사건을 육본 현병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병과 일병을 합한 비율이 약 5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병'만을 놓고 볼 때는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무려 77%를 상회한다. 이러한 통계는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사망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이병과 일병이 처한 군복무환경의 특수성이 자살의 압도적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sup>7)</sup>. 이병의 자살 중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신병 전입 후 단기간 내 자살이 빈번하다는 점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군 복무 초기 과정에서 신병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신병관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부실하게 운영해온 데서 오는 결과라는 것 역시 확인되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가 자살처리사건이며 특히 최근 사건의 경우 80% 이상이 자살처리사건이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무생활을 비롯한 부대환경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군 복무를 하는 20대는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보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 기이므로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특성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이러한 시기에 폐쇄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고립되어 하루 24시간을 구속당하면서 구타나 가혹행위에 수시로 노출되거나, 격렬한 업무, 숨 막히는 인간관계와 간섭, 특수한 주거 환경, 수면 부족, 긴장, 따돌림,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모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이 모든 요소가 예민한 정신의 뇌관에 불을 끌 수 있는 위험성을 상존한다.

사망자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생물학적 특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군 복무환경은 개인이 처하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도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은 특수 환경이라는 점에서 자살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매우 높 수 있다. 군 복무환경은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한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면, 특히 부대 내적인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경우 그 병사에게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생활의 다른 어떠한 관계, 예컨대 산업체이나 일반 공무상재해가 발생하는 환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결단은 그러한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이 있지만, 군 복무자는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는 탈영이 아니면 죽음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후자를 택하고 상당수는 전자와 후자의 순차적 경로를 따르기도 한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탈영이 아니면 죽음,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위원회 조사결과가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8)</sup>

7) 우리 위원회 진상규명결정 사건 95건 중 55명(57.89%)이 이병과 일병이며, '병'만을 놓고 볼 때 이병과 일병의 비율은 74.3%나 된다.

### (3) 한국사회의 성숙을 위한 기초 확보

분석심리학의 개념을 빌린다면 군의문사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sup>9)</sup>라 할 수 있다. 창군 이래 지금까지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한국사회 정체성의 어둡고 열등한 면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군사망 특히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원형’<sup>10)</sup>의 집단적 투사현상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사후 처리과정과 자살자 예우문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 G. Jung 분석심리학에 정통한 이부영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인 무의식의 그림자가 투사될 때는 고부간의 일상적인 갈등, 상사와의 알력, 타인과의 참을 만한 불쾌감에 머무를 수 있지만, 집단무의식인 원형으로서의 그림자가 투사될 때, 그 사람은 그 투사대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감정,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감, 혐오감을 느끼며 때로는 그 감정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귀신이나 마귀나 괴물로 보일 때, 혹은 하잘 것 없는 파리 새끼 정도로 보일 때,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고<sup>11)</sup> 한다.

군사망이나 자살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참으로 많이 접하게 된다. 가해자들은 흔히, “아이 참 몇 대 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글마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때려도 아픈 것 같지도 않고”, “관습처럼 때린 거죠”,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시에 생존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라고 진술<sup>12)</sup>한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장교와 병사들은 “(1970년대) 당시 여호와의 증인은 뱘갱이로 인식하다보니 이유 없이 때렸고 근무자가 바뀔 때마다 구타를 했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거냐? 북한에서 전쟁 일으켜도 너 신앙의 문제로 총 안 들면 매국노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지.”

8) 기타 군 자살이 의문사화 하는 문제의 이면에는 군 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기관에서 전담되어 자·타살에 만 초점을 두고 전문가 참여의 틀이 없는 채 조사가 진행되어온 문제, 심대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유족을 배려하고 이해시키는 전문적 시스템이 없었다는 현실, 나아가 병무행정 특히 징병시스템의 취약성, 보훈행정의 경직성과 보훈심사의 파행성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상세는 우리 위원회 발간,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2007년도) 자료 중 ‘군의문사 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참조하시기 바람.

9) 그림자는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내용으로 열등한 인격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는 그것이 외계의 대상으로 투사되거나 자아가 그것을 처음 의식할 때는 미숙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는 등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들이어서 좀처럼 자아가 자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들이다. 그림자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다가 보면 그 무리에 공통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만들게 되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의식에서 빼돌리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 공통된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개성의 발전보다는 집단에의 소속감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는 집단정신과의 동일시가 여러 모양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만큼 그 집단에 특유한 집단적 그림자 생기고 이런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다시금 집단적인 편견을 강화시켜 집단으로 하여금 결속하게 하고 다른 집단과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빚는다. 이부영, 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개정증보판, 2007. 7. 25. 제72~74쪽

10)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층은 많은 원형으로 구성된다. 원형을 집단적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인 원형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원초적 폭력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 힘은 자아로 하여금 통속적인 인간적인 영역을 뛰어넘게 한다. 자아의 힘은 원형과의 접촉을 통하여 팽창되거나 과장되고 자유를 잊으며 원형의 크나큰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부영, 앞의 책 제100쪽

11) 전자(인간이 귀신이나 마귀나 괴물로 보일 때)의 경우 자아는 마치 정의의 화신, 가장 아름다운 자유의 투사라고 믿으며, 후자(인간이 하잘 것 없는 파리 새끼 정도로 보일 때)의 경우 인간은 그 스스로가 생사여탈을 마음대로 누리는 초인이니나 신의 권력과 동일시한다. 하나는 ‘그림자 원형’의 투사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그림자 원형’과의 동일시에 대해서 그러한 파괴 행동을 일으킨다고 한다.

12) “그 정도의 폭언과 가혹행위는 저희 문화의 내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니까”; “구타는 보통이고 원산폭격 정도는 가혹행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나이 어린 선임병사들이 나이 많은 대학 졸업 후임자에게 따귀를 때리며 ‘아니꼬우면 일찍 들어오지’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때” 등 같은 종류의 진술들은 수 없이 많다,

라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정말 맨 날 전쟁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백일휴가 나가기 전까지 하루라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 고참이 다른 병사들 보는 앞에서 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결국 제 위의 고참들은 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저를 혼내려고 벼르는 거죠. 두렵죠. 군대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기억<sup>13)</sup>합니다. 얼마 전 자살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위원회와 같은 입장 을 보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역적보다 못한 놈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주는 엉터리없는 놈들이 있나.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놈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군인이 자살하는 것은 군 자산을 그냥 버린 범죄다. 범죄이기 때문에 국립묘지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이런 네티즌들의 사고와 대중들의 의식에 기대서 군 자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책임을 회피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마음에 있는 초인처럼 극단화된 집단이데올로기-비인간적인 반공주의나 애국주의-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적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죽어갔고, 다르게 낙인찍힌 나약한 개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증오와 혐오감에 압도당하며 이 감정에 따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은 또 한 번 집단적 투사의 대상이 되어 낙인찍히고 배제당하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사회를 성숙시키는 창조적 변환의 시발점에 우리 위원회가 서 있어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한국사회의 그림자 중 하나인 군의문사의 문제를 국가가 정면으로 -포괄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대면하여 해소하고자 했던 의지의 소산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유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실조사에 있어서는 주의 깊고 성실한 관조의 자세를 취하면서 군의문사의 진상을 그대로 살려내고자 노력하였다. 한 사건 한 사건의 조사결과와 결정을 낼 때마다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집단의식이 군의문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 우리사회가 창조적으로 변환되고 성숙하는 기초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다.

## 4. 향후 과제

### (1) 특별법 종료 이후 잔여사건의 처리문제

군의문사위의 목적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다.

그렇기에 군의문사위의 설립은 그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군대내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는 기억하고 보살피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다. 위원회의 존재 자체로 유가족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으며,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시법인 특별법은 금년 12월 31일로 자동 효력을 상실한다. 현재의 속도로 법정기한 만료일까지

13) “소초로 발령 온 첫날 실컷 두들겨 패고 잠깐 쉬게 하더니, 다시 1부터 100까지 맞으면서 세라고 하니까 총으로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음 근무지 사수에게 또 맞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실탄 한 발 날렸습니다. 좌우지가 안 맞으면 하루가 안 끝난 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현역병들이 방위병들을 심심풀이로 장난감 취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등 이런 종류의 진술들 역시 수 없이 많다.

350건 내외의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애초 300건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조직이었으나, 총 600건의 진정이 접수돼 250여건의 잔여사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잔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현 단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절대적 과제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가기관에서 접수한 사건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잔여사건의 처리방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특별법의 목적과 특별법에 근거한 진정인의 법률상 이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보장할 대안 없이 특별법과 위원회를 사망하게 두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진정인과 유가족 단체들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진상규명의 효력이 미흡하고, 진정목적과 다른 위원회 결정을 받고서도 위원회를 신뢰해 온 까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소속으로 거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 잔여사건의 진정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평등권을 지니고 있으며, 잔여사건도 종결사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조사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뢰는 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특별법을 연장하지 않고 잔여사건을 처리하려면 법률개정이나 대체입법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잔여사건의 처리체계를 현행 특별법의 규정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잔여사건 진정인의 기존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직면 할 수 있다.

## (2) 군 사망자 예우 및 군의문사 관련 제도개선 문제

군 자살자를 비롯한 의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예우하는 법령의 개정은 군의문사 유가족의 비원이며 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문제이다. 이는 군 복무가 지속되는 한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지적해 온 법령은 국방부장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을 비롯하여 사망자 예우와 관련한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등이 있다. 더불어 유가족의 사후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보듬을 전문적 치료체계가 마련되는 법령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보관 중인 시신·유골(미인수 시신 20구, 유골 24구 보관중임)에 대하여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차원에서 정중히 장례를 치르고 안장하는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군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군 사법체계의 개선, 실질적 군 음부즈만으로서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이미 실행방안을 마련했거나 제안했던 내용들이다. 이런 개선방안들은 일부 그 취지가 반영된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것으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들로, 위원회의 과제라기보다는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 5. 맷음말

군의문사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1998년 김훈 중위 사건에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유가족들이 군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특별법이 제정되고 우리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런 경위를 고려하기만 해도 군의문사는 고도의 폐쇄성과 통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군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위원회는 과거의 군이 사망사고를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서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설립되었다. 군의문사는 과거에 일어나 일들을 다시 살피는 문제라는 점에서 과거사(過去事)라 할 것이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대상인 과거사(過去史)는 ① 권위주의 시대 이전, ②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권리남용으로서의 국가폭력, ③ 인권유린이라는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과거사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 청산을 위한 과거사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는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위원회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위’라고 칭함)가 권위주의 시대 이전의 국가폭력 등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둘러싼 정파 간의 충돌이 침예한 것과 달리, 우리 위원회는 권위주의 시대 전후를 불문하고 정파적 관심의 대상 밖에 있어왔던 좀 더 보편적인 생명과 인권에 대한 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으로서 응당 보장받았어야 할 권리를 이제라도 행사하겠다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청산’보다는 ‘권리의 보장’을 통한 인권신장에 목적을 두므로 정파적 대립 없이 활동해 왔는데, 이 역시 두 위원회가 성격을 달리 하는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폭력은 일정한 민주주의 발전단계를 지나면 그 위험의 상당 정도를 없앨 수 있어 그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활동은 민주화의 수준을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군의문사는 민주화의 발전단계가 높아지더라도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이고 따라서 위원회 활동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한 현실의 병영문화와 제도개선에 초점을 모을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형성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는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구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존의 국가기관이 맡기에는 곤란한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립되었다.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진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검증된 시스템과 조사역량을 가지고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순리이자 가장 실용적인 군의문사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14) 과거청산이란 구정권과 그 시대 하에서 벌어진 권리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다. (박원순, 과거청산 이대로 좋은가, 열사회보 1998. 7~9.) 과거청산은 국가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배상하고 그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정치적, 문화적 청산을 완수하는 것.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37쪽, 39쪽, 민주법학 제24호 2003년).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과거사 정리 작업은 크게 보아 국가가 그 국민들을 상대로 행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는 작업과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작업이다(한홍구, 과거청산 작업의 제도화와 시민社会의 역할, 진실화해 Vol.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9~10, 제4쪽)

**<별첨> 진상규명 결정 사건 요지(2008.10.17. 현재, 총 95건)**

\* 사망종류는 전사, 타살, 사고사, 병사, 자살로 구분하였고, (직무기인성 인정) 표기가 없는 경우는 직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이름	계급	군별	사망년도	군수사결과	위원회 조사결과		결정일
					결정요지	조사결과	
김영식	하사	육군	1982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망 김영식은 군복무 중 1982. 9. 29. 20:00경 선임인 피진정인 노○○에게 구타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타살(직무기인성 인정)	13차(2006.12.6)
박정훈	이교	경비교도대	1996	자살	박정훈은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 복무 중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13차(2006.12.6)
이승호	이경	전경	1997	자살	망 이승호는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 복무 중 전투경찰순경 책임자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 전투경찰순경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 구타, 욕설 및 따돌림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16차(2007.3.28)
공준석	일병	육군	1959	사고사	망 공준석은 군복무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16차(2007.3.28)
김진철	이병	육군	1993	사고사	사망한 김진철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복무 중 3일간 군무이탈하였으나 자수하여 긴급구속 상태로 관할 현병대로 호송 중, 현병간부 및 호송현병들이 "구속 피의자 입송시에는 간부가 직접 부대차량으로 (호송)하라"는 상부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간부 동행 없이 민간열차로 호송한 과실, 호송현병들이 위 김진철의 열차 내 이동시 철저히 감시를 하지 않은 과실, 철도청이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한 승강구 폐쇄 등의 철도여객 운송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 등이 결합되어 본 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18차(2007.5.30)
박득만	상사	육군	1988	사고사	망 박득만은 부대회식 직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소속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18차(2007.5.30)
조준환	일경	전경	2002	자살	망 조준환은 군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구타와 만성적인 수면 결핍 등의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에 의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고 인지 능력을 상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0차(2007.7.10)
박승범	병장	육군	2000	자살	망 박승범은 군 복무기간 중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지휘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대처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요우울증으로 악화되고 과중한 업무수행과 그에 뒤따르는 업무 부담, 부당한 질책 및 소속 부대원들과 사이에 발생한 여러 부정적 생활사건 같은 스트레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0차(2007.7.10)

최동수	일병	육군	1965	병사	망 최동수는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 폐부종, 뇌세균성색전증이 병행하고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0차(2007.7.10)
이명덕	이병	육군	1956	병사	망 이명덕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세균성 이질이 병행하고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0차(2007.7.10)
박술용	-	국민방위군	1951	기록없음	망 박술용은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훈련 중 구타 등에 의해 심한 상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망인의 삼촌 집에 유기된 후 망인의 집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타살(직무기인성 인정)	21차(2007.8.17)
권오석	이병	육군	1976	병사	망 권오석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활동성 폐결핵이 병행하고,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2차(2007.9.19)
송명금	일병	육군	1955	병사	망 송명금은 부대의 기동훈련 중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급성폐렴에 걸려 연대 의무대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 증상이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2차(2007.9.19)
이종국	상병	육군	1970	자살	망 이종국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망 하사 임○○와 함께 총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망 하사 임○○가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	사고사	22차(2007.9.19)
손진화	이병	육군	1994	자살	망 손진화는 군복무 중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3차(2007.10.24)
박영대	하사	해군	2003	자살	망 박영대는 군복무 중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한 상사의 계속된 질책, 짖은 보직이동 및 전출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3차(2007.10.24)
박무호	기타	육군	1956	병사	망 박무호는 군 복무 중 지지주위염에 걸렸으나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신체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3차(2007.10.24)
신봉남	이병	육군	1951	사고사	망 신봉남은, 1951. 12. 24. 제주도 소재 육군 제1훈련소 119중대에 부대원을 살상할 목적으로 침투한 외부인에 의한 막사의 화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의 와중에 전신 4도의 화상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	전사	23차(2007.10.24)
김수영	일병	육군	1973	사고사	망 김수영은 공무수행 중 원인불상의 경위로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4차(2007.11.21)
송창호	일병	공군	1969	사고사	망 송창호는 부대회식 후 만취하여 직감실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선임병이 직감실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망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공구 또는 주먹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1차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직감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2차 충격을 받아 뇌저골손상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	타살(직무기인성 인정)	24차(2007.11.21)
강신일	이경	의경	2002	자살	망 강신일은 군기가 매우 세다고 알려져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 제73중대 제1소대로 배치될 것이라는 두려움, 소속부대 배치 후 계속된 선임대원들의 구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 강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육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4차(2007.11.21)

					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주용덕	하사	육군	1976	사고사	망 주용덕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신 박 O-O를 훈계하던 중 동인이 발사한 실탄에 맞아 두부관통 총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24차(2007.11.21)
김창주	중사	육군	1955	병사	망 김창주는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결핵성 경부림프절염이 발병하고, 증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24차(2007.11.21)
노상서	이병	육군	1969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망 노상서는 동료 교육생인 장O-O의 구타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	타살(직무기인 성 인정)	24차(2007.11.21)
금성필	일병	육군	2005	자살	망 금성필은 군 입대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격 오지인 142레이더기지로 전출되어 주특기 이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질책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렸고,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김성원	상병	육군	1959	병사	망 김성원은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하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로 퇴원하여 복무를 계속하던 중 다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전역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로 군 병원에서 입원 중 정신분열증의 악화에 따른 심장 기능의 악화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조수호	일병	육군	1988	자살	망 조수호는 소속부대의 간부들과 상급 병사들로부터 강도 높은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등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인격과 신체에 극심한 침해를 당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참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고형채	이병	육군	1978	사고사	망 고형채는 공무수행 중 원인불상의 경위로 수류탄이 폭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김용훈	소위	육군	2003	자살	망 김용훈은 삼송검문소 초소장으로 복무 중 과중한 업무, 선임 장교들의 질책과 부당한 업무간섭, 종교생활의 제한 등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 오용훈	이병	육군	1999	사고사	망 오용훈은 철책선 지오피(GOP) 경계임무를 완료한 후 선임병의 괴롭힘을 호소하려 중대장에게 가다가 이를 말리는 소대장과 대치하게 되었고, 소대장의 설득에 응해 자신의 목에 겨누었던 총기를 내리던 중 총구가 엑스(X)밴드에 걸려 발사된 실탄에 맞아 사망하였으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25차(2007.12.18)
유장현	이병	육군	2001	자살	망 유장현은 소속 부대에 전입된 지 1개월 정도 된 신병으로서 부대 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경계 근무와 제초작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선임병사들로부터 갖은 욕설 등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안종찬	소위	육군	1992	자살	망 안종찬은 지오피(G.O.P.)에 근무하면서 선임병들과의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갈등에 따른 소속소조 병사들로부터의 소외, 과중한 작업의 부담, 지휘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	성 인정)	
김재영	이병	해군	1958	병사	망 김재영은 훈련소 소대장에게 아전삽자루로 구타를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쇼크 또는 구타 당한 상처에의 2차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타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노경춘	일병	육군	1987	자살	망 노경춘은 내성적인 성격과 허약한 체력으로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소속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심지어 개구리나 뱀까지 먹기를 강요당하는 등 부대생활 중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아 '우울 증상을 동반한 적응 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에 동반되는 '사고장애'가 발병하였고, 적당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조남	상병	육군	1988	자살	망 조남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수입봉, 거눔대, 곡괭이 자루, 군화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최정훈	일경	의경	2003	자살	망 최정훈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및 수면결핍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와 고립감, 그리고 특별외박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여 선임대원들로부터 당할 구타 등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충동조절 등의 정신장애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하종규	병장	육군	1957	사고사	망 하종규는 소속부대의 임무인 건설 작업을 하던 중 높은 시설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김민철	일병	육군	2001	자살	망인은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한 소속대에 관측병으로 배치된 후 행정반 보급계로, 다시 서무계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표 작성으로 인하여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까지 당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점차 심화되었으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오태환	상병	육군	1964	병사	망 오태환은 열악한 부대 환경, 근무 여건, 의료 체계 내에서의 군 복무로 인하여 뇌감염성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두개내압항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제갈동일	이병	육군	1986	자살	망 제갈동일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의 부재로 인한 전입신병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26차(2008.1.23)

이해근	중사	육군	1988	사고사	망 이해근은 급여 인출과 사단 의무대 치과진료를 위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외출한 뒤 용무를 마치고 복귀 중 교량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6차(2008.1.23)
장방남	병장	육군	1958	병사	망 장방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장폐색증으로 사망	병사(직무기인정 인정)	26차(2008.1.23)
이한평	대위	육군	1954	사고사	망 이한평은 비행대장 직무대리 및 선임장교로서 후배장교에게 정당한 훈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인하여 사망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6차(2008.1.23)
한성필	이경	의경	2004	자살	망 한성필은 신병교육대에서의 간이정신진단에서 우울증 증상과 탈영 및 자살충동의 위험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가혹한 직무수행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주요우울증 및 초기 정신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7차(2008.2.27)
권태연	일병	육군	1955	병사	망 권태연은 공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	병사(직무기인성 인정)	27차(2008.2.27)
추순호	일병	육군	1970	사고사	망 추순호는 야간에 부대 진지를 건설하는 작업 후 폭우 속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양강에 빠지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정 인정)	27차(2008.2.27)
김기웅	병장	육군	1966	병사	망 김기웅은 공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	병사(직무기인정 인정)	27차(2008.2.27)
이승원	일병	육군	1998	자살	망 이승원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및 허약한 체력 등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사병으로 관리되었으나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간부들의 무관심 등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진교덕	이병	육군	1988	자살	망 진교덕은 소속대 배치 후 선임병들의 육설, 가혹행위로 인해 긴장, 불안, 분노감이 누적되었고, 주간경계근무 투입시부터 병장 전O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가혹행위를 당하자 통제감 손상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박충식	일경	의경	2003	자살	망 박충식은 트럼펫 연주 경험과 능력이 없어 경찰악대에 입대하여 부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트럼펫 연주 실력에서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김종명	일병	육군	2003	자살	망 김종명은 열악한 내무반 환경, 간부 및 선임병들의 질책과 억압, 병원 입원에 따른 업무 부적응, 과다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인 수면 결핍,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우울 정서를 동반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병적 발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최정식	이병	육군	1957	사고사	망 최정식은 위병 근무 중 트럭에 치이거나 타고 가던 수송 트럭이 전복되는 등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차량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김태중	병장	공군	1970	사고사	망 김태중은 외출허가를 얻어 외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기 위해 소속부대 정문 앞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8차(2008.3.26)
임귀남	일병	육군	1950	기록없음	망 임귀남은 수색정찰 중 지뢰폭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정 인정)	28차(2008.3.26)
송기출	하사	육군	1992	자살	망 송기출은 소속대에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자 사격훈련 중 자아통제력 상실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려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탄이 장전된 M16A1 소총의 총구를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하려는 몸짓을 취하게 되었고, 이를 본 동기 하사가 발로 망인의 총기와 겜어치는 충격으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성 인정)	29차(2008.4.30)
추승복	상병	육군	1969	자살	망 추승복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추승복은 선임병 최O으로부터 평소 언어폭력과 구타에 시달렸고 이 사건 당일에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최수남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격분하여 위병소 근무 도중 엔원(M-1) 소총을 휴대한 채 내무반에 들어가 위 최O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최O를 뒤쫓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정 인정)	29차(2008.4.30)
변우식	이경	전경	1994	자살	망 변우식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익숙치 못한 취사업무를 혼자 담당하던 중 기간 요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승선하고 있던 함정을 무단이탈하였고, 이후 지휘관의 허위보고 등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정 인정)	29차(2008.4.30)
정희봉	병장	육군	1977	타살	망 정희봉은 수류탄 투척훈련 중 하사 송O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타살되었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타살(직무기인정 인정)	29차(2008.4.30)
이민수	이교	전환	2003	자살	망 이민수는 부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육설, 가혹행위, 고된 직무 수행과 강제노역에 따른 장기간의 수면결핍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29차(2008.4.30)
원성재	상병	육군	1988	자살	망 원성재는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30차(2008.5.28)
전왕희	하사	육군	1979	자살	망 전왕희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2소대로의 전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부분대장으로의 보직변경,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초급간부의 경계근무지 배치 등 소속대의 부적절한 간부운용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30차(2008.5.28)
서승완	일병	육군	2002	자살	망 서승완은 왜소한 체구, 약한 체력, 좌측 아킬레스 건염으로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으나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언어폭력, 간부들의 부적절한 부대 관리 등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성 인정)	30차(2008.5.28)

김종필	상병	육군	1983	자살	망 김종필은 강도 높게 지속된 가혹행위, 대리근무 강요 등의 내무부조리와 간부들의 부실한 부대관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김승환	일병	육군	2005	자살	망 김승환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 및 인격모독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자살우려가 있는 보호관심사병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부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김시종	일병	육군	1954	병사	망 김시종은 한국전쟁 직후의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군복무를 하던 중 긴장성마비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박정수	일병	육군	1996	자살	망 박정수는 GOP 근무 중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수면결핍 등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수행,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정도문	중사	해군	1972	사고사	망 정도문은 부대원 남○○과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소속대 내무반으로 후송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서병욱	하사	해군	1977	병사	망 서병욱은 현병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발병한 다발성 척추신경염으로 해군포항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 등 치료를 받던 중 정전으로 인한 호흡보조장치(식선기)의 작동정지로 호흡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김철준	이병	육군	1997	자살	망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여 일반인보다 적응능력이 떨어지는바, 군입대 후 병영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였고,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속대에 배치된 후 14일의 부대적응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해안경계근무에 투입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급자들의 언어폭력, 질책까지 받게 되자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신상범	상병	육군	1987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망 신상범은 1987. 2. 27. 19:30경 하사 흥○○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전투화발로 가격당하여 심진탕 내지 원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	타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최명길	이경	전경	1996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망 최명길은 소속부대로 전입한 지 4일째 되던 1997. 4. 7. 오후 다른 신입대원들과 함께 소속부대 장비창고 뒤에서 선임대원 추○○과 박○○ 등 다수의 선임대원들로부터 집단적인 구타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타살(직무기인 성 인정)	30차(2008.5.28)

윤광열	소위	육군	1999	자살	망 윤광열은 소속대 초임장교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적응장애를 겪어오던 중, 자대 부임 첫날부터 사건 발생 당일 새벽까지 3일간 계속된 과도한 음주화식으로 인지능력 및 충동 조절 능력 장애를 일으키는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중대장으로부터 병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설과 머리박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어 장교로서의 자존감 상실, 수치심, 모멸감 등을 심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이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하인 부소대장으로부터도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당하게 되자 소대 통솔에 대한 절망감, 모멸감 등이 가중되어 순간적으로 자신의 방어기제와 충동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유의지 부재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김태균	중위	해군	1998	자살	망 김태균은 단기간의 군복무 경험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 힘든 보급관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운용과 관련한 위법한 업무관행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및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관의 욕설 및 비인격적인 질책 등에서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최영식	이병	육군	1984	자살	망 최영식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방위병으로 징집되어 현역병들에 의한 상습적인 모욕, 구타 및 가혹행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강요된 과중한 작업동원, 야간경계 근무 중의 강요된 술시중과 가혹한 연속 근무 등 참을 수 없는 위법한 근무환경에 시달린데 더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소위 '고문관'으로 취급되어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나 지휘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서현덕	이경	의경	2005	자살	망 서현덕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1급 다한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훈련 중 입은 발목부상의 악화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겪은 충격과 공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이병설	상사	육군	1958	사고사	망 이병설은 외출허가를 얻어 외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기 위하여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자동차에 치여 사망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정환조	중사	육군	1999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망 정환조는 소속대 훈련 중 중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지형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실족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1차(2008.6.27)
손철호	소위	육군	1998	자살	망 손철호는 과도한 작업, 부소대장 및 소대원들과의 갈등, 만성적인 수면부족 및 수면박탈, 중대장의 지나친 질책 등 초임 소대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2차(2008.7.23)
유정복	하사	육군	1957	사고사	망 유정복은 공무수행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2차(2008.7.23)

홍상철	이병	육군	1987	자살	망 홍상철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무리한 작업 동원, 근무편성 규정을 위반한 경계근무 투입 등 내무부조리, 지휘관의 감독소홀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2차(2008.7.23)
박율기	상병	육군	1964	사고사	망 박율기는 수송부 병장 김○○로부터 애전복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얻어맞아 두개골 골절 및 뇌挫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제7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	타살(직무기인 정 인정)	32차(2008.7.23)
김병균	상병	육군	1969	사고사	망 김병균은 일과를 마친 휴식시간 내지 자유시간에 부대 시설의 하나로 활용되던 부대 옆 개울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거나 그 주변을 거닐던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2차(2008.7.23)
천경진	이병	육군	2000	자살	망 천경진은 복무 중 이병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 및 지속적인 육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2차(2008.7.23)
김영규	이등 상사	육군	1950	사고사	망 김영규는 한국전쟁 중인 1951. 10. 25. 강원 고성군 간성면 광산리에서 시범전투 중 전신 파편창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전사한 자에 해당	전사	32차(2008.7.23)
박성우	이병	육군	2001	사고사	망 박성우는 전입 신병으로서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 간부와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지적 기능의 장애와 정서불안이 심화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근무지 이탈하였다가 혹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판단 및 행위선택 능력을 잃고 저체온으로 사망했기에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3차(2008.8.27)
이선형	일병	육군	1965	자살	망 이선형은 왜소한 체구, 약한 체력, 만성적인 위장병 등 구타, 가혹행위에 취약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잦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모면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인정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3차(2008.8.27)
김인중	상병	육군	1958	병사	망 김인중은 소속부대에서 공무수행 중 심장성 돌연사(급성 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으로 급사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병사(직무기인 정 인정)	33차(2008.8.27)
홍완표	이병	육군	1990	자살	망 홍완표는 부대 내 구타, 열차려 등 가혹행위와 부대의 관리 소홀로 불안과 우울정서를 동반한 적응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일 가혹행위를 일삼는 병사와 초소경계근무를 서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육설과 괴롭힘,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라는 예기불안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행위선택 능력을 잃고 사망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이재찬	이병	육군	2001	자살	망 이재찬은 부대 부적응, 부대원들 및 간부들로부터의 따돌림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상태에서 사망국방부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조덕종	상병	육군	1970	자살	망 조덕종은 부대의 인사관리 소홀로 수색중대에 배치되어 상시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요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상태에서 사망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이정인	일병	육군	1958	사고사	망 이정인은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과 함께 부대 난방 및 취사용 땔감 마련 작업에 투입되어 무거운 땔감을 등에 지고 눈 내리는 좁은 능선을 서둘러 걸으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수행 중 사망	사고사(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노광용	병장	육군	1982	자살	망 노광용은 훈련단장 공관에서 근무할 당시 성주체성 및 성역할 혼란에 따른 심리적 취약성이 있었음에도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속상관인 전속부관의 지속적이고 지나친 가혹행위로 인해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당일 다시 위상관으로부터 한 시간 가까이 구타와 육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자 주요우울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한근수	이병	육군	1999	자살	망 한근수는 선임병과 중대장으로부터 당한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및 육설 등 언어폭력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송중권	일병	육군	1990	자살	망 송중권은 간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중한 훈련과 사역, 사격연습,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와 육설, 폭언 등 언어폭력으로 인해 신경성 빈뇨증이 발병할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인격의 침해를 당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참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	자살(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구홍서	상병	육군	1960	병사	망 구홍서는 군복무 중 발병한 농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	병사(직무기인 성 인정)	34차(2008.9.24)

# 미래 창조는 과거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선진화 필요성—

허상수

모든 정치권력은 자기 지지기반의 유지와 새로운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자기 편 가르기를 즐기지 않을 수 없다. 추종세력역시 최고 권력자에게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노출하여 권력분점에 끼어들려는 충동을 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워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세금 줄이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보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신자유주의 30년 정책의 결과, 국가개입은 줄어들지 않았고, 감세는 사회복지로 위축시키고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끝장을 보고 말았다. 최근 8년 동안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전쟁비용을 부담한 탓에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모는 해답은 여기에 있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정책 집행에 골몰하고 있다.

최고 권력자는 선거 당시 드러난 것처럼 전과 누범이라는 과거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이라는 정치 캠페인을 통해 권력 장악에 성공하였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폐지방침 구상이었다. 마치 1917년생 만주군 중위 출신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1961년 5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자마자 1960년 4월 혁명 이후 잠시 동안 경향각지에서 제기되었던 과거청산 운동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것이다. 이리하여 국가는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의 대못질을 해대려 든 것이다.

즉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존치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하여 사실상 3년 이내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건의 민원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를 하는 작태에 대해 지난 반세기이상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한국전쟁전후 100만 피학살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들은 천봉지사와 같은 충격과 경악,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마치 ‘점령군’과 같은 이런 악폐는 일제 패망이후 친일부역혐의를 조사하고 징치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조사활동을 강권으로 금지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민족처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제를 청산하는 일은 결코 퇴행적 일이거나 단순히 과거 회귀적 사업이 아니다. 과거청산은 이념적, 행태적, 제도적 유제를 청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안정화시킴으로

써 바람직한 미래 창조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과거청산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 의도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인권침해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관련된 억압기구의 해체와 민주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과거청산은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의해 꾸준하게 추진되어 ‘더러운 과거 씻어내기’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시민들을 백주 노상에서 처참하게 학살한 범죄행각의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쌓아 왔다. 그러나 워낙 오랜 시기동안 여러 유형의 피해 때문에 사건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 경제상 관련 사안의 통합 처리를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런데 돌연(突然)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유로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를 사실상 고사(枯死)시킴으로써 청산작업을 중단, 자체, 훼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과거청산은 정책진화(evolution)의 과정을 보여 왔으나 현 정부아래에서 아연(啞然) 왜소화되어 마침내 사멸되려는 위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부터 살펴보자.

## 1.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

이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18개 위원회는 현재 집권중인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과의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 제정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과거사 정리관련 법률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도 없으려니와 입법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나 주장을 반영하여 제정, 시행되어 온 것이다. 사실 관련 사회단체나 피해 유족단체에서는 법률 내용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가득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라도 과거사 정리를 해 갈 필요성 때문에 나중에 개정 기회를 찾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법 시행을 지켜보아 왔던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위원회에 상임위원 등으로 위촉된 인사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존립과 운영에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지는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

## 2.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현황

행정안전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에 의하면 2008년 9월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총 18개가 있다고 한다. 이미 설치, 운영중인 16개 이외에 설치 진행중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08. 6.), 설치 예정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08. 10.)가 있다.

이들 위원회가 많아진 이른바 난립의 배경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종합적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안별 입법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법률상 활동기한이 정해진 경우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나뉘지만,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할 필요성, 예를 들면 접수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간연장을 통해 활동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한시위원회와 비한시위원회로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표 1〉 한시위원회(6개)**

위원회명	존치기간	접수 및 처리	처리율	공무원 정원(현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위	'05.3-'09.3(4년) 6월씩 2회 연장 가능	226,608건 접수/83,862건 처리	37.0%	45명(42명)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05. 5-'09.5(4년) '08년 6월 이미 연장	약 946건 접수/310건 처리	32.8%	55명(49명)
군의문사진상규명위	'06.1-'08.12(3년)	600건 접수/252건 처리	42.0%	35명(32명)
과거사정리위원회	'06.4-'10.4(4년) 2년 연장 가능	10,949건 접수, 3,141건 처리	28.7%	150명 (141명)
친일재산조사위	'06.7-'10.7(4년) 2년 연장 가능	452건 대상/187명 처리	29.9%	68명(68명)
10·27법난명예회복위	'08.6-'10.6(2년)	준비중(약 1,930건 접수 예상)	-	-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위원회의 존치기간과 접수 및 처리상황, 처리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긴박한 활동시한에 쫓기면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9월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8.7%, 친일재산조사위는 29.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32.8% 밖에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침대로라면 이들 위원회의 존치' 기간 안에는 100% 처리 완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비한시위원회(12개)**

위원회명	설치 시기	접수 및 처리	처리율	공무원 정원
5·18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	'90.8	6차 접수 1,008건 심의 및 보상 처리중	6차 보상 진행중	행정 안전부 지원
거창사건명예회복위	'98.2.	희생자 및 유족 심사 완료 추모공원조성 및 부대 공사 추진중	완료	3명
제주4·3사건 진상규명위	'00.5	추가접수 3,163건 조사 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중	08.12 완료?	3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위	'00.8	13,348건 중 11,234건 처리	84.7%	18명
삼청교육피해자보상위	'04.7	6,000건 중 5,952건 처리	99.2%	2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	'04.7	6,900건 3,561건 처리	59.3%	4명
노근리사건명예회복위	'04.8	추가 접수 78명 조사 중 희생자 묘역, 역사공원 조성 추진 중	08.12 완료?	3명
동학농민혁명예회복위	'04.9	2차 참여자 511건 중 258건 처리	50.5%	5명
6·25특수작전공로자 인정위	'04.11	활동 종료	완료	-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07. 10	190건 중 119건 처리	62.6%	11명
태평양전쟁강제동원 지원위	'08. 6	신청 접수중	-	6명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	'08. 10 예정	미설치	-	-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지 아직도 추가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의 위원회에는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들은 파견 상태에서 모두 원대 복귀한 상태이다. 정원외 인원인 계약직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파견직만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위원회의 소속별로 보면 대통령 3개, 국무총리 13개, 국방부장관 1개, 독립 1개로 분류할 수 있다. 업무 소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9개, 국방부 5개, 법무, 통일, 문화관광, 복지부 각 1개로 되어 있다.

### 3. 현 정부 과거청산정책의 문제점

왜 현 정부는 과거청산에 소극적이고 서두르고 있을까?

이 정부는 이들 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으로 첫째, 다수의 유사, 중복위원회 설치로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들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동일 사건 중복조사 및 유사업무간 연계 미흡을 들고 있다. 둘째, 잣은 법개정을 통한 업무확대 업무시한 연장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들고 있다. 셋째, 유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법안발의 및 논쟁 소지를 들고 있다. 과거청산은 한마디로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청산은 경제회생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이 정부는 절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폐지 등을 상정한다면 국회의원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혁명기도 아닐 것일텐데 임의로 위원회의 존치를 위협하는 듯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행정부가 나설 계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업무 중복과 예산과 인력 낭비가 문제시된다면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각 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진단하여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위원회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위원회간 업무 조정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위원회간 업무 협의, 조정, 역할 분담, 업무 영역 재조정 등의 사안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이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어린이에게 '불장난'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양치질은 식사한 다음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이다. 이점에서 이 정권의 과거사정리정책은 한마디로 새롭게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밖에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출혈하고 옹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선진화를 운위할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보(progress)이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파행의 연속일 수 없다. 이 정부는 다른 소리를 더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대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질서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존중해야 할 덕목이다.

셋째, 이 정부는 속도중독증에 빠져 있다. 취임 직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조기 출근 요구가 어떤 후유증을 낳고 흐지부지되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시간과 속도에 대한 강박 증세는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일'과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성질의 신경질적 정신 상태를 말한다.

넷째, 이 정부는 일몰제(日沒制)에 의해 존치기간이 만료하면 위원회 활동을 폐지하는 데 따르는 후유증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도 수행해야 할 사건 처리율이 많게는 100%에 이르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71.3%나 처리할 사건들이 남아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불과 2개월밖에 남아 있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처리한 252건보다 더 많은 348건이 남아 있다. 즉 적어도 3년의 시간을 확보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다. 이제 숙달된 경험, 자료의 축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2년 이상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표 3〉 정부방침(일몰제)에 의해 위원회 폐지 예정 시간내에 처리해야 할 과업

위원회명	존치기간	접수 및 처리	현재 처리율	남은 시간	처리의무	잔여 처리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위	'05.3~'09.3(4년) 6월 씩 2회 연장 가능	226,608건 접수/83,862건 처리	37.0%	5개월	142,746건	63%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05.5~'09.5(4년) 6월 이미 연장	약 946건 접수/310건 처리	32.8%	7개월	636건	67.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06.1~'08.12(3년)	600건 접수/252건 처리	42.0%	2개월	348건	58.0%
과거사정리 위원회	'06.4~'10.4(4년) 2년 연장 가능	10,949건 접수, 3,141건 처리	28.7%	18개월	7,808건	71.3%
친일재산 조사위	'06.7~'10.7(4년) 2년 연장 가능	452건 대상/187명 처리	29.9%	21개월	265건	70.1%
10·27 법난 명예회복위	'08.6~'10.6(2년)	준비중(약 1,930건 접수 예상)	-	24개월	1,930건	100%

다섯째, 더욱이 존치기간의 제한은 이들 위원회 활동에 중대한 압박요인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날림조사와 형식적 진상규명은 재조사의 요구와 유족들의 항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많은 의혹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존치기한에 밀려 사건처리가 실종된 다음 관련된 사안들이 별도의 법에 의해 재조사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력의 감축과 출속 처리는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갈등과 분란의 대량 발생이 전국적 양상으로 비화한다면 결코 경제적 방식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집단갈등의 조짐조차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 비용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더 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존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도 제주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처럼 추가접수에 의해 아직도 처리할 사건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충분한 활동기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무국의 통합을 통해 사건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나 유족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사무국의 병합으로 관련 업무를 모두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한 마디로 역사 퇴행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첫째, 전체 과거청산관련 위원회의 결성과정에서의 입법조치의 정당성이 이명박 정권의 방기로 유실되고 좌초되는 소위 ‘자연사’ 되는 처사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실규명 결정 이후 특히 후속조치 측면에서 민간인학살 발굴유해들이 수년 동안 방치되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장 전체 진상규명 신청건수의 3~40%밖에 처리가 안되어 있고, 6~70%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과거사정리관련 위원회의 강화가 아니라 군의문사위를 사실상 축소시키고 진실화해위로 병합시키려는 기도는 명백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정치적 기도의 다른 표현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을 dm 하는 유족들은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천덕꾸러기처럼 다른 위원회로 던져진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셋째, 예를 들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도 신청건수의 1/3 밖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원위에 병합하려는 것 역시 진상조사기능을 없애는 결과이다.

넷째, 국방부 관련 과거사 정리 기구의 사무국 통합 이후 해소하거나 다른 기구 역시 사무국 통합 후 해소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업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의미가 있게 가꾸고 정리하는 방향과 거리가 먼 행위들인데 이것들은 그동안 국민예산을 들여 힘들게 이루어놓은 과거청산의 성과를 방치하는 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 몰상식이 상식을 구축하고 일상화되고 있다. 상식불통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비정상사회가 계속되면 상식의 체념, 정치적 무관심, 정치 허무주의를 재생산하면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성이 고정화된다. 자율과 방종의 무분별, 줄다리기 싸움(tug of war), 정치논리의 과잉, 행정 개선이 아니라 개악(改惡)의 만연과 같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사실상의 편법, 탈법, 무법의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되는 민주주의의 황혼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대중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학사관의 극복, 성공한 시대에 대한 균형이 잡힌 평가와 역사서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일부 부서가 학살자를 미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거청산, 유제 극복의 제도적 성과를 부정하는 일은 너무나 상식 밖의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무리수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 주어야 한다.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의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도 없이, 국회에서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심의절차도 없이 과거사정리 관련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방침은 일언지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폭력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사실(fact)과 가치 판단의 혼재는 논란을 잠재우기 보다는 분란을 부추길 수 있다. 과거청산의 단절, 중단, 지체는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절망의 국민실패시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노출하는 것이며 선진화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중단없는 전진만이 국민분열의 원천을 해소하고 갈등과 분란, 원성과 증오의 구악을 일소하는 길이다.

보통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3무(無), 하는 일마다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3비(非) 등을 거론하며 정치지도력을 타박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나아가 3통 부족을 말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즉 ‘통이 작고, 소통이 부족하며 통찰력도 부실하다’는 말이다. 이미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익보수주의 이념의 틀에 스스로 가두어 둠으로써 개방성, 유연성, 진취성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청산정책분야만이라도 입법 취지에 맞는 행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올바른 과거청산정책의 미래지향성

이제 올바른 과거청산정책의 집행 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올바른 과거청산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이 정부의 최대 약점인 ‘신뢰의 위기’, ‘소통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과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 재개에 일정한 창구가 마련되고 일정한 효과와 기여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정부와 대화를 해 왔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시민사회 원로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이 정부는 일부 시민, 일부 국민과 필요한 말만 주고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대화 상대를 넓혀서 사회의 여러 부문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깔끔한 처리를 통한 과거사 정리는 한국사회를 선진화된 인권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지름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과거 불미스런 사건을 청산하는 일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과의례이다. 근대국가의 완성을 과거청산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치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고문, 납치, 불법구속과 같은 엄청난 인권유린과 불미스런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는 가해와 피해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 이 과거사 청산작업을 완료해야만 진정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 기본과제의 하나여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피해 유가족의 가슴에 못질을 두 번씩이나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동안 피해 유가족들은 정치적 소외, 사회적 차별, 경제적 궁핍, 문화적 황폐를 맛보며 떳떳한 국민으로 살아오지 못하였다. ‘일국내 식민지 백성’과 같은 설움과 한의 눈물을 이제 나라가 앞장을 서서 씻어주고 국민의 일원으로 재탄생하여 사회통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실패시대는 재래(再來)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과거청산 없는 사회의 선진화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올바른 의미의 선진화도 아니다. 이 정권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무리한 정책기획 시도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과거청산과 역사적 정의 실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위원회들을 통합을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는 모두 마쳐야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정도의 과거사 정리 정책 시행만으로도 국격(國格)의 향상,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러운 과거사를 짚어지고 가는 양상보다는 산뜻한 국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주의 세력을 이해시켜 가면서 진정한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능력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입법 목적에 충실한 행정을 촉구한다.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들은 입법 당시 나름의 정당성을 획득하여 국회에서 의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 학계, 시민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 법률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위원회의 구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위원회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표 4〉 주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입법목적

법률명	입법 목적
5·18民主化運動等에관한特別法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為에 대한 公訴時效停止 등에 관한 사항 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80년 5월 18일을 前後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傷痍를 입은 者(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關聯者와 그 遺族에게 實質的인 補償을 함으로써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며 나아가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희생된 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回復 및 補償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民主主義의 발전과 國民和合에 기여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紛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犠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뒤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

대부분의 법률들은 입법 목적을 통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증진, 국민의 신뢰회복, 민족정기 선양, 고통 치유, 국민화합, 국가기강 확립, 민주화 정착,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 사회정의 구현, 압제에 저항한 운동의 헌법 이념 구현,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함에 이바지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과거청산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활동은 전면 보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가? 선거에 승리하는 정권이 아니라 정치에 성공하는 정부로 거듭 부활할 때에만 가능하다. 소심한 권력자가 아니라 대범한 정치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만약 과거청산에 적극적 정치를 편다면 과거 정부가 행사하지 못한 민족자주적 과거청산 캠페인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일제 성노예문제나

노근리 미군학살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공식 요구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부끄럼지 않고 당당한 나라만들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실용주의적 가치와 선진화 필요성에 대하여 재삼 재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건들이 진실규명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많은 희생자유족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청 산 관련기구의 폐지방침을 즉각 거두지 않는다면 이 땅의 양심세력들과 시민들은 유족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거룩한 기억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 앞에 반성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다면 선진문화사회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자랑스러운 나라를 원한다면 과거의 수치를 선선히 털어내고 청산해야 함이 역사의 순리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자료]

#### 〈표 5〉 주요 과거사정리 관련위 현황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에서 2007년 12월경 조사한 것임.

위원회 명칭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법률명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법적근거	제정 2005.5.31. 법률 제7542 호 (여야합의)	제정 2004.3.22. 법률 제7203호 / 제1차 전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61호 / 제2차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 제3차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 7937호 (여야합의)	제정 2005.12.29. 법률 제7769호 / 제1차 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75호 (여야합의)	제정 2004.3.5. 법률 제7174호 / 제1차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 제2차 일부개정 2007.3.23. 법률 제8311호 / 제3차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여야합의)	제정 2005.7.29. 법률7626호 / 제1차 일부개정 2007.6.1. 법률 제8496호 (여야합의)
제정·개정정보	-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 활동을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하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활동기한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조사개시결정 시점(2006.04.25)부터 2010.04.25(4년)까지 이고 2년 연장시 2012.04.25까지임.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 위원회구성완료일 (2005.5.31)부터 2009.5.31(4년)까지이고 6개월 연장시 2009년 11월 30일까지임.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 위원회구성완료일 (2006.7.13)부터 2010.7.13(4년)까지이고 2년 연장시 2012.7.13까지임.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진상조사개시결정 시점(2005.03.25)부터 2009.03.25(4년)까지 이고 2회1년 연장시 2010.03.25까지임.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법안발효시점 (2006.01.01)을 시작으로 2008.12.31 (2년)까